

한국역사민속학회

제67회 전국역사학대회 및 제271차 월례발표회

▶ 제1발표

고려 말 해상활동을 통한 왜구 제압과 안변(安邊) 모색: 기술, 조직 사람

- 발표: 오기승(중앙대학교)

- 토론: 최봉준(가톨릭대학교)

▶ 제2발표

임진전쟁과 피난, 그리고 의례: 왕실과 사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 토론: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 제3발표

일제 총동원체제하 '가사고용인'역제 정책과 '식모난(食母難)'

- 발표: 이아리(서울대학교)

- 토론: 이송순(고려대학교)

○ 일시: 2024년 10월 26일(토),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7동 218호

▶ 제 1 발표 ◀

고려 말 해상활동을 통한 왜구 제압과
안변(安邊) 모색
: 기술, 조직, 사람

발표: 오기승(중앙대학교)

토론: 최봉준(가톨릭대학교)

고려 말 해상활동을 통한 왜구 제압과 안변(安邊) 모색 -기술, 조직, 사람-

오기승
중앙대학교

목 차

1. 14세기 동아시아의 전쟁 상태와 왜구의 준동
2. 화약 제법 및 관련 기술 체계의 도입
3. 조직 정비와 해상세력 확충
4. 전술과 전과를 통한 안변(安邊)으로의 가능성
5. 결론

1. 14세기 동아시아의 전쟁 상태와 왜구의 준동

14세기 중엽 이래 고려 국내의 평화는 크게 위협받는 상태에 있었다. 이 시기 명시적인 국가 대 국가 단위의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 남북의 변경지대를 위시한 여러 지역에서 단속적으로 군사적 충돌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고려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 또한 전쟁의 공기에서 유리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고려만의 것이 아니기도 하였다. 주변국의 상황을 아울러 살펴보면, 실제로 14세기 고려가 전화에 휩싸여 있던 시기를 전후하여 동아시아 영역 대부분이 각각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에서는 원(元) 제국의 중원 통치에 반발하여 대규모로 봉기한 1351년 홍건적(紅巾賊)의 난을 전후하여 장사성(張士誠), 진우량(陳友諒), 명옥진(明玉珍), 주원장(朱元璋) 등 다수의 할거세력이 강남 및 사천 지역에서 일어나 혹은 원 제국의 진압군과, 혹은 각각의 할거세력 사이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여러 할거세력 중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주원장이 1368년 명(明)의 황제로 즉위하고 북벌을 통해 원을 중원에서 축출한 이후에도 14세기 말까지 산서와 요동 등지에서 북원(北元)과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1333년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의 붕괴와 나카센다이[中先代の乱](1335)을 거쳐,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의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가 옹립한 조정(북조)과 건무 신정[建武新政] 세력의 조정(남조)이 대립하였던 이른바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내전이 역시 14세기 말인 139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 이러한 분쟁을 무대로 활동했던 일부 무력집단은 때로 각각의 국가 영역 바깥으로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혀 타국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14세기 중엽 이래 고려의 평화를 위협했던 군사적 분쟁과 이에 촉발된 각지의 전쟁 상태는 이러한 동아시아 전체의 전쟁 상태와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14세기 동아시아의 전쟁은 결국 한중일 모두에서 한계에 달했던 기존 정권의 붕괴와 신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전쟁상태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무력집단들 중 고려 말의 남방 안변(安邊)을 가장 지속적으로 위협했던 집단은 왜구(倭寇)라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는 이들의 전체적인 침입 기간과 그 빈도, 나아가 침입과 그로 인해 초래된 피해의 범위와 규모 등 여러 측면의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왜구의 등장에 대한 기록 자체는 13세기부터 나타나지만, 고려에 대한 이들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증대되는 것은 대체로 14세기 중엽 경인년(1350)부터로 본다. 이 시기 왜구의 침입 빈도와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는 것은 당시 일본이 앞서 언급한 이른바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동란 하에 있었던 것을 그 주요한 배경 중 하나로 본다. 14세기 왜구의 주요 근거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슈[九州] 일대의 지역들인데, 이 지역은 당시 북조의 규슈 탐다이[九州探題] 세력과 남조의 정서부(征西府) 세력을 양 축으로 하여 토착 세력인 쇼니[小弐]씨, 기쿠치[菊池]씨, 오토모[大友]씨 등이 각각 지지하는 세력에 따라 대립하며 반복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¹⁾ 이 때문에 남조이든 북조이든 반쪽짜리인 조정이 일본 내에서 왜구에 대한 일방적 금압(禁壓)을 엄밀히 시행한다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았고, 나아가 각지에서 일어나는 독자적 무장세력의 준동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고려 말의 준동 당시 왜구의 선단 규모는 클 경우 500여 척에 달하였으며, 참여한 인원 역시 최대 수천에서 1만 이상으로까지 추산되기도 한다. 이들이 자행한 침입의 범위 역시 조운선 습격이나 해안 약탈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내륙 지역까지 침입하여 각지를 습격하다가 요격해온 고려군과 야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남방만이 아니라 수도인 개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까지도 그 습격이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장비나 전술 역시 단순한 습격과 약탈, 혹은 해상에서의 소란 등을 넘어서서 육전에서의 기병부대 운용이나²⁾ 기병-보병 연계 운용³⁾, 보병부대의 야리부스마[槍

1) 무로마치 막부 세력이 간노의 요란[觀応の擾乱]으로 내분을 일으키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3파전의 양상을 띠기도 하였다.

2) 『高麗史節要』卷30, 禡王 3年 5月

禽]와 유사한 집단전술의 활용⁴⁾ 등이 『高麗史』와 같은 국내 사료를 통해 추정 가능하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이들은 단순히 해적화된 규슈 지역의 연해민 집단에 그치지 않고 아쿠토[悪党]로 전락한 전 무가(武家)세력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일본의 남조 정권을 지지하던 규슈의 토착 무가세력 그 자체가 배후에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⁵⁾

이렇게 왜구의 침입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고려 측의 초기 대응은 대체로 다소 수동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또한 왜구의 상륙 자체를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륙 이후 육지에서 대응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역시 왜구 집단이 공격로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고려군이 이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고려 말기 원의 간섭으로 인해 고려의 자체적 상비 군사력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과도 연관이 있었다. 공민왕 재위 초기 이색은 해상에서 왜구를 요격하는 전략을 제안했던 바 있지만⁶⁾, 이것이 구체적인 관련 조직 구성을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공민왕 재위 말년에 이르러서의 일이었다. 이는 공민왕이 당시 북방에서의 군사적 이슈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타당할 것이다. 공민왕은 즉위 이래로 중앙군을 비롯한 자체적 군사역량의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위 초반기인 1356년(공민왕 5) 단행했던 기씨 세력 척결과 쌍성총관부 탈환 이래 두 차례에 걸친 흥건적의 침입(1359, 1361), 나하추의 침입(1362), 덕흥군 세력의 침입(1363), 삼선-삼개의 침입(1364), 동녕부 세력의 위협으로 인한 동녕부 원정(1370) 시행 등을 잇달아 겪으며 북쪽에서의 군사적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했던 것이다. 결국 공민왕은 실제로 동녕부 세력의 위협까지 완전히 제거했다고 할 수 있는 1370년대 초에 와서야 새로운 함대 건설이나 화약무기와 같은 신무기 도입 시도 등 본격적인 수전 역량 강화 정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한 이후 얼마 안 가 공민왕은 암살로 생을 마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고려가 기술적, 조직적 측면에서 본격적인 해전 역량 강화를 꾀도에 올리고 해상전에서의 유의미한 전과를 통해 왜구를 제압함으로써 안변(安邊)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우왕대에 이르러서의 일이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고려 말 해상세력 강화를 통해 왜구를 제압하고 이를 통해 변방을 안정시켜 지역의 전쟁 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술적 측면과 조직 구성 측면에서의 흐름을 살피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사항을 아울러 함께 논해 보고자 한다.

3) 『高麗史節要』卷31, 禡王 5年 5月

4) 『高麗史』卷114, 列傳27, 禹仁烈

5) 일본의 남조 토착 무가세력과 왜구의 직접적 연결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영, 『왜구, 고려로 번진 일본의 내란』, 보고서, 2020 등을 참조해볼 수 있다.

6) 『高麗史』卷115, 列傳28, 李穡

2. 화약 제법 및 관련 기술 체계의 도입⁷⁾

기술적 측면에서 왜구 제압의 결정적 실마리가 된 것은 우왕 재위 초 시기에 화약의 생산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와 그 운용에 관련된 기술을 고려 내에서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본래 고려는 몽골과의 접촉을 통해 늦어도 13세기 말 즈음에는 화약과 화약병기를 처음으로 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⁸⁾ 고려가 자체적으로 화약기술을 확보하게 되기 이전에 화약과 화기의 도입을 시험해 보았던 것은 공민왕이었는데, 전장에서 양 측 모두 실제로 화기를 운용하였던 장사성의 반란 당시 원의 요청에 의해 지원군으로서 그 진압에 참여했던 고려군 수뇌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⁹⁾

총통(銃筒) 등의 화약병기를 처음으로 시험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1356년(공민왕 5)의 일인데¹⁰⁾, 이 당시에는 원과의 긴장 속에서 서북면 방위를 위해 육상운용을 위한 화기를 시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민왕 말년인 1372, 1373년(공민왕 21,22)의 시험사격 기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해안지대에서 이를 시험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함대 건조 기사와 같이 화약무기 관련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A-1. (공민왕이) 인월곶(引月串)에 머물며 화전(火箭)을 쏘았다[放].¹¹⁾

A-2. (공민왕이) 새로 건조된 전함을 보고 또 화전과 화통(火筒)을 시험하였다. 밤에 마장(馬場)에 유숙하였다.¹²⁾

즉 이 때는 왜구 제압을 위한 수전(水戰)에서의 화기 운용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고려에서는 화약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이 되는 염초 정제를 포함한 화약 제법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공민왕은 명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시도했다. 이에 고려는 1373년

7) 이 부분은 대체로 ‘오기승, 『여말선초 화약 및 관련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체계적 재구성』, 『역사와 현실』123, 한국역사연구회, 2022.’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8) 여몽전쟁 기간 동안에 몽골군이 화약병기를 사용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된 실사례라고 단정지를 만한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다만 몽골군이 고려군과 합동으로 전투를 벌였던 1271년의 진도 삼별초 공격 및 1274년 및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에서 몽골군이 화기를 사용한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려군이 화약병기를 명확하게 접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늦어도 대략 이 시기 즈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 오기승, 위의 논문, 67-68쪽.

10) 『高麗史』卷81, 志35, 兵1, 恭愍王 5年 9月

11) 『高麗史』卷43, 世家 43, 恭愍王 21年 10月 甲午 “次引月串 放火箭”, 활을 통한 사격에 주로 사용되는 ‘射’가 아니라 전근대 기록에서 화기 발사에 주로 사용되는 ‘放’을 동사로 쓴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문장의 ‘火箭’은 활로 쏘는 불화살이 아니라 화약의 연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화약병기 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高麗史』卷44, 世家 44, 恭愍王 22年 10月 丁丑 “觀新造戰艦 又試火箭火筒 晚宿馬場”

(공민왕 22) 말에 명의 중서성(中書省)에 자문(咨文)을 보내어 왜구 제압을 위한 화약, 유황, 염초 및 관련 장비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¹³⁾ 다음 해인 1374년(공민왕 23) 6월에 도착한 회답을 통해 명의 중서성과 홍무제는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다.¹⁴⁾ 그리고 얼마 안 가 같은 해 9월 공민왕이 암살당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화약 도입 시도는 사실상 좌초되었다. 다만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 외교를 통한 기술 도입 시도가 실패했던 것과는 별개로, 이와 비슷한 시기 최무선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통해 화약의 자가 제조 및 관련 기술의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다.

화약 관련 기술에 대한 최무선의 목적의식 및 문제의식은 『朝鮮王朝實錄』 최무선 졸기에 인용된 “왜구를 제압하는 데는 화약만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制倭寇莫若火藥 國人未有知者)” 라는 그의 발언에¹⁵⁾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즉, 최무선은 왜구의 창궐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고려에는 아직 관련된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외부에서 이를 습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화약을 이용한 왜구 제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약의 개발만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지는 않는다. 화약을 이용하는 화기를 생산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왜구와의 수전을 위해 선상에서 이를 집단적으로 운용하는 기술 등이 아울러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최무선이 습득한 기술 역시 화약 제법의 핵심인 염초 정제 기술 및 이를 통한 화약 제조 그 자체만이 아니라 화약을 기반으로 운용하는 장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었다. 이들 각각의 사항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료를 들면 다음과 같다.

B. (우왕 3년) 10월 비로소 화통도감을 설치했는데, 판사(判事)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다. 최무선이 같은 마을에 사는 원 염초장(焰硝匠) 이원(李元)을 잘 대우하여 몰래 그 기술을 묻고, 가동(家僮) 몇 명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이를 시험해 본 후 비로소 왕에게 건의하여 설치하였다.¹⁶⁾

C.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가 상소(上疏)하여 이르기를… 또 신라(新羅)

13) 『高麗史』 卷44, 世家 44, 恭愍王 22年 11月. 이 당시 명확히 유황과 염초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 고려가 화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곧 고려가 화약 제법을 온전히 익히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코닝(corning)과 같은 일종의 균질화 과정 없이 목탄, 유황, 염초를 단순히 혼합하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흑색화약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14) 『高麗史』 卷44, 世家 44, 恭愍王 23年 6月(壬子). 이 당시 중서성은 자국에서의 쓰임새 또한 많다는 이유로 고려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홍무제는 염초 500,000근과 유황 100,000근이라는 비합리적으로 많은 양을 고려에 요청하면서 제시한 물자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화약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답을 통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고려에는 염초의 정제 기술이 없었으며, 기술을 확보한 조선 초기에도 염초 생산량이 1년에 1만 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5) 『太祖實錄』 4年 4月 壬午

16) 『高麗史』 卷133, 列傳 46, 禡王 3年 10月 “十月 始置火燭都監 從判事崔茂宣之言也 茂宣與元焰硝匠李元同里閭 善遇之 竊問其術 令家僮數人 習而試之 遂建白置之”

때부터 단지 포석(砲石)의 제조만 있고 역대(歷代)로 화약의 법이 없었는데, 전조 (=고려) 말에 최무선이 처음으로 화포의 법을 원나라에서 배워 가지고 돌아와 그 기술을 전하니, 지금은 군진(軍鎭)에서 사용하여 이로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¹⁷⁾

D. [최무선이] 전함의 제도를 연구하여 도당(都堂)에 말해서 [전함을] 갖추어 만들어 내는 것을 감독하였다.¹⁸⁾

위의 사료 B는 국내에서의 활동과 탐문을 통해 핵심이 되는 염초의 추출법을 포함한 화약 그 자체의 제법을 습득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한편 사료 C는 최무선이 입원(入元) 활동을 통해 화포의 운용 기술을 습득하여 왔음을 말하고 있다.¹⁹⁾ 그리고 사료 D는 화약병기를 신고 수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형 전투함의 건조를 최무선이 감독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수록된 정이오(鄭以僞)의 「火藥庫記」에서는 최무선이 한반도에 와서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함을 만들게 하고 이를 감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⁰⁾ 이는 최무선이 신형 전함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고려 선박을 기반으로 중국 선박의 제도를 참조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²¹⁾ 이 시기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미 수상전에서 화약병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었으므로²²⁾, 최무선 역시 입원 기간의 활동 과정에서 이를 참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최무선은 화약 및 화약병기의 생산 및 개발을 진행함과 아울러, 전함 제조에 동원된 중국인들을 통해 수상 선박에서 화약병기를 거치 혹은 휴대하여 사용하기 위한 중국의 선박 구조를 고려의 전통적 선박 기술에 이식할 수 있도록 하여 선상에서의 화약병기 운용을 전제로 한 신형 전함의 개발 및 건조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³⁾

17) 『世祖實錄』 2年 3月 28日 丁酉 “集賢殿直提學梁誠之上疏曰…又自新羅只有砲石之制 而歷代無火藥之法 前朝末崔茂宣 始學火砲之法於元 東還而傳其術 至今軍鎭之用 利不可言” 한편 이와 같은 맥락의 발언을 『成宗實錄』 9年 10月 13日 辛丑 양성지의 상서문, 『成宗實錄』 18年 8月 3日 庚午 최무선의 증손 최식(崔湜)의 상서, 『成宗實錄』 8年 4月 16日 癸丑 현석규의 발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 모두 최무선이 화포 사용법을 도입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중 양성지와 최식은 최무선이 원에 들어가서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8) 『太祖實錄』 4年 4月 19日 壬午 “訪求戰艦之制 言於都堂 監督備造”, 한편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 下, 軍器寺 「火藥庫記」에도 같은 맥락의 기록이 실려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인 중 한반도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전함을 만들게 하였다고 적고 있다.

19) 양성지는 위 사료 C에서 화약과 화포를 구분하여 따로 언급하고 있다.

2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 下, 軍器寺 「火藥庫記」 “始設火燭都監 煎取焰硝 且募唐人之來寓而打造戰艦 公又監督”

21) 강성문, 1995 「여말선초 전술변화와 외교정책」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지』 2-1, 한국전통과학기술학회

22) 장사성의 반란 과정에서 있었던 1353년 고우 공방전에서 나시르 알 딘의 원나라 부대가 화통을 집단적으로 사격한 기록이나, 1363년 주원장 세력과 진우량 세력 사이의 파양호 수전, 1363년 요영충(廖永忠)이 명옥진 세력을 공격할 때의 기록 등, 최무선이 화약 및 화포 관련 기술을 습득했던 14세기 후반의 중국에서는 선박에 화약병기를 거치하거나 승선원이 휴대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23) 다만 이와 별개로 조선 초의 기록에서 후술할 정지(鄭地)와 관련하여 ‘정지가 처음으로 전함을 만들

종합하자면 최무선의 기술 개발은 화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화약 병기 및 이러한 병기를 탑재하여 운용할 선박에까지 걸친 것으로서, 여러 갈래의 기술을 포괄하는 하나의 무기체계 전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이르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조직 정비와 해상세력 확충

이렇게 확보한 기술을 운용할 조직 구성 및 인원의 충원은 대체로 우왕대에 들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조직은 화통도감일 것이다.²⁴⁾ 앞서 사료 B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1377년(우왕 3) 화통도감의 설치에 최무선의 건의에 의한 결과였으며, 그는 새로이 성립된 화통도감의 책임자 역할을 맡아 화약 및 화약병기의 생산 및 개발을 전담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무선이 화통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것이 곧 온전히 국가가 전담하여 ‘화통도감’의 조직을 편성하고 이렇게 편성된 조직에 최무선 한 명만이 담당 책임 관료로서 부임했다는 구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의 사료 B를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최무선은 원 염초장 이원의 기술을 개인 대 개인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라 ‘가동 몇 명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이를 시험하는’ 방식으로 습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최무선 개인이 기술을 탐구하여 습득하고 화약을 제조하였다는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적인 기술 습득 및 화약 제조는 최무선과 기술을 전수받은 그의 가동들로 구성된 하나의 기술자 집단 단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애당초 당시 흑색화약의 생산 공정을 살펴보자면, 염초 정제를 위한 첫 단계인 취토(取土)부터가 적지 않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집단적인 채취 작업이 필요하였다. 즉, 일개인이 당시 화약 생산의 전체 공정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우면서 또한 비효율적인 일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통도감이 설치되고 최무선이 국가에 의해 그 책임자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최무선과 그 가동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화약기술자 집단 전체가 ‘도감’이라는 고려 특유의 임시 조직²⁵⁾에 소속되는 것을 통해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은 형태에 가깝다

었다[卒判開城府事鄭地 始造戰艦](『太祖實錄』 3年 9月 甲寅), 혹은 ‘정지가 처음으로 병선을 만들었다[鄭地 肇造兵船](『太宗實錄』 3年 5月 己亥) 등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는 최무선이 개발한 전함의 일부 개량을 의미하거나 혹은 3장에서 이야기할 주력함대의 건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전술한 대로 고려 말의 화약 관련 기술이 최무선 기술집단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최무선 계열을 배제한 독자적 화약병기 관련 개발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24) 이하 화통도감 조직 관련 내용은 대체로 ‘오기승, 「여말선초 화약 및 관련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체계적 재구성」, 『역사와 현실』123, 한국역사연구회, 2022.」의 내용을 요약 발췌 및 수정한 것이다.

25) 도감은 고려 초부터 정규 관부가 담당하기는 어렵지만 긴급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설치되었다가 그 역할을 다하면 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 화통도감의 업무는 기존의 고려 체제에 있어 생소한 요소가 많았을 것이므로 도감 조직의 형태

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화약기술은 고려라는 국가가 온전히 통제하고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최무선 개인이 자기 소유의 가동들을 포함해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가산에 가까운 개념이었고, 화통도감의 설치는 도감이라는 형태로 이 ‘가산’을 국용(國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구도인 것이다.

사실 고려 말의 상황에서 이러한 구도는 그리 특이한 현상조차 아니었다. 애당초 도감이라는 조직 자체가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모아 편제하는 조직인 만큼 조직원 구성이 편중되기 쉬운 경향이 있었으며, 대체로 별도의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경향도 있었다. 또한 고려 말이 되면 국가권력 및 자산의 분점 사유화가 이전보다 심화되면서 가별초(家別抄)와 같이 특정 인물 아래 단결된 사병집단을 가진 세력가들이 횡행하였고, 중앙군 양성 역량이 부족했던 고려 정부가 이러한 사병의 소유주들을 필요할 때마다 군 지휘관으로 임명하여 간접적으로 병력을 확충하는 현상도 고려 말기에 드문 일은 아니었다.

화통도감 시기 최무선 휘하의 기술자집단 역시 초기에는 최무선 개인 소유의 가동들이 주요 구성원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넓게 보면 이러한 가별초 부류의 사병집단과 본질적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이들이 무력을 주 역량으로 삼는 군사집단이 아니라 특수한 기술력을 자신들의 주 역량으로 삼는 기술자집단이었다는 것에 있다.

물론 이것이 화통도감 그 자체가 사조직이나 그에 준하는 기구였다거나, 그 생산물이 가산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동시대에 여러 차례 있었던 공민왕대의 군사 분쟁 사례 등에서 나타나다시피, 고려 말 가별초 집단은 사병이라 할지라도 일단 동원되어 편제되면 고려라는 국가의 군대로 기능하여 ‘국용’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무선 중심의 기술자집단 역시 화통도감의 조직 안에서는 당연히 ‘국용’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그 생산물인 화기와 화약 역시 그러한 것이다. 다만 고려 말의 사병집단이 그러했던 것과 유사하게, 그 화약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술자집단이 당시까지는 최무선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가산과 유사한 위치에 있으면서 도감체제를 통해 공적인 역할을 위해 동원되는 형태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화통도감에는 최무선 중심의 기술자 집단과 별개로, 이들의 보조 역할을 맡은 화통방사군(火桶放射軍) 조직이 있었다. 이들은 본래 사원의 소유인 사노(寺奴)를 국가가 차출의 형태로 동원하여 화통도감에 배속시킨 것이었다.²⁶⁾ 이 역시 사원의 고유 자산을 이른바 ‘국용’을 위해 동원한 형태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새로운 수군의 조직 방안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이와 유사하게 사적으로 구성된 조직을 ‘국용’으로 동원하여 위임하려는 형태의 조직 구성 흐름이

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정황적으로 이상한 일은 아니다.
26) 『高麗史』 卷81, 志 35, 兵 1, 禡王 4年 4月

나타나고 있었다. 우왕 즉위 직전, 공민왕 재위 말기인 1374년(공민왕 23) 이희(李禧)와 정준제(鄭准提)²⁷⁾가 건의한 해상에서의 왜구 요격 방침이 채택되었다. 이 당시 공민왕은 이희와 정준제를 만호(萬戶)로 임명하면서 각자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에게 첨설직을 제수하고 천호와 백호를 임명할 수 있는 공명첩(空名牒)을 수여하였는데²⁸⁾, 이는 공민왕대의 다른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장에게 휘하에 대한 임면권을 포함한 재량권을 주고 자체적으로 병원(兵員)을 충원케 하는 형태였다.²⁹⁾ 이는 유사한 방식으로 흥건적의 2차 침입 당시 개경 탈환을 위해 단시간에 20만을 동원해 냈던 데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담당 무장의 역량에 따라 비교적 용이하게 대규모의 동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반면, 그렇게 성장한 무장의 정치세력화 혹은 무장 상호간의 다툼을 부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³⁰⁾

이에 우왕 초에는 그와 다르게 국가 제도와 직접 동원 체계 차원에서 후방 지역 병력자원의 확보 및 조직화를 시행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공민왕이 북방에 도입했던 익군(翼軍) 제도에 먼저 주목하였다. 공민왕은 재위 말기 동녕부 세력을 제압하는 준비과정에서 서북계 지역에 익군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만호제³¹⁾를 도입하여 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던 바 있다. 이에 우왕은 1378년(우왕 4) 익군 제도를 남쪽 해안지대를 포함한 5도(道) 지역에도 확대 실시하려 하였으나 지역 상호간의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백성의 부담만 크게 가중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이는 6개월 후에 혁파되어 실패로 끝났다.³²⁾

이후 우왕의 조정은 1380년경 육지의 각 도(道)와 유사한 개념으로海道(海道)를 설정하여 새로이 조직을 구성하였다. 기존에 도통사(都統使)로서 육지의 병력을 관할하던 최영(崔瑩)에게海道도통사를 겸하게 하면서 '海道'라는 개념상의 영역을 관할하는海道원수(海道元帥)를 설치한 것이다. 이는 고려 말 육지의 각 도에서 운용되었던 원수제와 같이 도원수(都元帥), 상원수(上元帥), 부원수(副元帥) 체제로 운용되었다. 그리고 그 휘하 구성원은 주로 목포와 나주 등 선박 운용에 익숙한 서남 해안지대의 병력자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개경 인근 수로의 요지인 교동(喬桐)-강화(江華)에 기지를 두고 있었다.³³⁾

이는 왜구에 대하여 차후로는 해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전략상의 대전제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그 구체적 준비와 실행의 방침과 관련해 최영과 정지의 방책 중 후자가 채택된 결과였다. 두 정책의 방향성은 정지 열전에 실린 내용을 통해

27) 鄭地의 초명(初名)

28) 『高麗史』卷113, 列傳26, 鄭地

29) 여기서 첨설직을 받아 신규 부대의 근간을 맡게 될 사병들이 최무선과 함께 직접 이원에게서 관련 기술을 배워 화통도감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있었을 가동들에 대략적으로 대응된다 할 수 있겠다.

30) 흥건적 2차 침입 격퇴 이후에 실제로 무장 세력 간의 알력으로 상호 충돌이 일어났던 바 있다.

31) 익군제 하의 만호들은 기존의 만호제와 달리 임면권을 포함하여 이전에 비해 국왕의 제어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호였다.(오종록, 「고려후기의 군사지휘체계」, 『국사관논총』24, 국사편찬위원회, 1991)

32) 『高麗史』卷81, 志35, 兵1, 禑王 5年 閏5月

33) 『世宗實錄』地理志, 京畿, 富平都護府, 喬桐縣

대략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E. 깊은 육지의 백성들은 배를 부리는데 익숙하지 못하니 왜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바다 섬에서 성장하였거나 스스로 수전(水戰)을 요청하는 자만 서명을 받아서 신(臣) 등에게 그들을 거느리게 한다면 5년을 기한하여 바닷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순문사(都巡問使) 같은 것은 한갓 군량만 허비하고 민생을 어지럽힐 뿐이니 바라건대 이를 파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순찰사(巡察使) 최영을 불러 그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최영이 처음에 6도(道)를 순찰하고 전함 2,000척을 건조하여 여러 도의 군사들을 시켜서 왜구를 잡게 하였는데, 민들이 모두 싫어하고 괴롭게 여겨 집을 부수고 달아나는 자가 10에 5·6이나 되었다. 이 때에 이르러 정지 등이 의견을 제기하자 사태가 마침내 잠잠해졌다.³⁴⁾

최영의 방안은 6도에 걸쳐 2,000척이라는 대규모의 함선을 건조한다는 것이었는데, 각 도마다 충분한 양의 전력을 비축하여 어느 방향, 어느 지역으로 왜구가 들어오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응력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역습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실현되었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으나, 기획한 규모의 거대함만큼이나 전국적인 물력 소모와 인력 동원을 수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 사료에 따르면 실제로 과중한 역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불만을 품었던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반면 정지의 방안은 수전에 맞지 않는 내륙 거주민들까지 무리하게 전부 동원하지 말고 바다에 익숙한 연해 거주민이나 자원자를 위주로 해상전력을 편성하여 정예함을 기하자는 데 그 요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군액(軍額)의 절대수치는 최영의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지만, 대신 해상전력 전체의 높은 숙련도와 함대 자체의 활발한 기동을 통해 이를 별충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⁵⁾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려가 해도원수들의 지휘 하에 바다에 익숙한 서남 해안의 병력 자원³⁶⁾을 바탕으로 수도 인근에 전력을 배치하도록 했던 것은 곧 정지의 의견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바로 이들 해도원수들 휘하에 조직되었던 함대가 곧 화약병기의 운용을 전제한 신형함선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이 개발한 화약병기 및 이와 결합한 신규 전술을 집중적으로 운용했던 고려의 새로운 주력함대였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병기를 탑재한 신형함선들 및 이들과 연계할 다수의 고속함선들로 편제되

34) 『高麗史』卷113, 列傳26, 鄭地

35) 실제로 이후 이렇게 구성된 함대는 수도 인근인 교동-강화에 기지를 두고 이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남쪽 해안 지역까지도 출동 범위로 삼아 활동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이들에 대해서는 按撫를 통해 민적에 등록되지 않은 유망민을 모아 전력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정동훈, 「고려 공민왕 대의 군사화」, 『진단학보』142, 진단학회, 2024, 93쪽.)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신형함선은 화약병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실을 갖춘 대형 누선(樓船)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화통방사군(火桶放射軍)과 같은 화약무기 전문 운용인원들도 여기에 주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보조할 고속함선은 과선(戈船)을 계승한 소형 검선(劍船)을 위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함대는 도통사와 원수 제도를 통해 중앙이 통제하는 해상 기동전력으로서 수도 개경 인근의 방위 역할에 그치지 않고 서해안 및 남해안까지 광범위하게 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조직으로 구성된 이 함대가 처음으로 그 결과물을 내보임으로써 왜구의 연속된 대규모 습격으로 형성된 전쟁상태에 대한 해상에서의 타개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 바로 1380년(우왕 6)의 진포해전(鎭浦海戰)이었다.

4. 전술과 전과를 통한 안변(安邊)으로의 가능성

진포해전 시점에서 해도원수 휘하 함대(이하 편의상 ‘해도함대’로 호칭)의 전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일단 육상 각 도(道) 병력의 도통사를 맡고 있던 최영에게 해도(海道)의 도통사를 겸하게 한 것이 1380년(우왕 6) 4월의 일이었다³⁷⁾, 최영의 열전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해도함대의 병력은 전함 100척에 수졸(戍卒) 3천이었다고 한다.³⁸⁾ 한편 진포해전과 관련된 『高麗史』의 기사들에서는 같은 해 8월 해도원수 나세(羅世), 심덕부(沈德符), 최무선(崔茂宣)이 진포로 향할 때의 함대 규모를 100척으로 적고 있다.³⁹⁾ 즉, 진포해전 시점에서 해도함대의 전력은 전투함 100척, 병력 3천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은 대로 해도함대가 누선(樓船)과 같은 대형 전투선과 검선(劍船)과 같은 소형 고속선이라는 이중 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인데, 100척이 전부 같은 형태의 선박이라고 하면 1척당 병력이 30에 불과하게 되어 화약병기를 운용하는 병력을 따로 수용하는 전투선을 건조했다는 앞서의 서술과 다소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누선과 검선의 비율을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부족하나, 해도원수 중 한 명으로서 진포해전에 참여했던 심덕부 졸기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간략하게나마 추산이 가능하다.

F. 경신년에 왜적이 우리 남쪽 변방을 노략질하니, 그 형세가 심히 성(盛)하였었다. 덕부가 누선(樓船) 40척을 거느리고 가서 이를 쳤는데, 도적들이 다시는 날뛰지 못했다.⁴⁰⁾

37) 『高麗史』 卷134, 列傳47, 禡王 6年 4月

38) 『高麗史』 卷113, 列傳26, 崔瑩, “臣任事既多 今又都統海道 恐不能堪 且戰艦纔百艘 戍卒僅三千”

39) 『高麗史』 卷134, 列傳47, 禡王 6年 8月, “遣海道元帥羅世沈德符崔茂宣 以戰艦百艘 追捕倭賊.” 한편 당시 해도원수를 역임한 나세의 열전에서도 1380년 진포로 향할 때 고려 함대의 규모를 100척으로 적고 있다.(『高麗史』 卷114, 列傳27, 羅世, “又與德符崔茂宣等領戰艦百艘 追捕倭賊”)

경신년은 곧 진포해전이 있던 1380년을 가리킨다. 그리고 당시 함대의 누선이 40척이었다는 위의 기록을 감안한다면 진포해전 당시 해도함대 전체 전력 100척 중 누선과 검선의 비율은 약 4대 6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가 한다.⁴¹⁾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해도함대의 대략적인 전술 형태는 창검을 쫓아 적선이 접근하기 힘들고 속도가 빠른 검선으로 적의 등선을 방해하고 기동을 차단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린 누선이 기동력이 봉쇄된 왜선을 화약병기로 불사르는 형태로 상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먼저 진포해전의 경우에는 왜구가 500척이라는 규모의 이점을 믿고 배를 굵은 줄로 서로 묶은 상태로[以巨絙相維] 고려 함대에 대항했다는 기록⁴²⁾이 있어 왜구 선단의 기동성이 애당초 크게 저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선들의 역할은 주력 누선에 대한 적의 등선을 방해하는 쪽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도함대는 화약병기를 이용하여 적 함대를 대부분 불태워 버리는 높은 전과를 거두는 데 성공하였다.

한편 정지가 해도원수를 맡아 왜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1383년(우왕 9)의 관음포해전(觀音浦海戰)에서는 해전의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G. 적이 큰 배 20척으로 선봉을 삼고 배마다 날랜 군사 140명씩을 배치하였다. 정지가 나아가 공격하여 앞장서서 그들을 패배시키니 떠다니는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 또 남은 적을 활로 쏘니 시위가 울릴 때마다 번번이 (적이) 쓰러졌으며, 마침내 적을 크게 패배시키고 화포를 쏘아[發] 적선 17척을 불태웠다.⁴³⁾

여기서는 왜구가 먼저 140명이 탑승하는 대형 선박 20척으로 선봉을 삼아 돌격해 오자 이것을 먼저 격파하고 그 이후에 화포를 쏘아 적선을 불태운 것으로 전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패주하는 적군을 추격하여 전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화포가 활용된 사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검선들의 경쾌한 기동으로 적선의 빠른 도주를 차단할 수 있었기에 누선의 화력을 전과확대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어느 쪽이든 화약병기를 집중적으로 탑재한 누선과 속도가 빠른 검선을 유기적으로 운용하여 왜구 함대를 제압하는 것이 해도함대의 기본적인 운용 교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로, 앞서 언급한 진포해전 및 관음포해전에 대한 전투 기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논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 상기 해전과 관련된 각종 관련 사료에서는 고려 함

40) 『太宗實錄』 1年 1月 14日 甲戌, “庚申 倭寇我南鄙 其勢甚張 德符將樓船四十艘往討之 寇不復跳梁”

41) 검선의 1척당 탑승원은 10-15인 정도로 추측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총전력 3,000에 대입하여 역산하면 누선 1척의 탑승원은 평균적으로 대략 52-60인 정도로 추산해볼 수 있다.

42) 『高麗史』 卷126, 列傳39, 邊安烈. 최무선의 줄기에도 배들을 모아 서로 묶었다[聚船相維]라는 표현이 있다.

43) 『高麗史』 卷113, 列傳26 鄭地, “賊以大船二十艘爲先鋒 艘置勁卒百四十人 地進攻 先敗之 浮屍蔽海 又射餘賊 應弦輒倒 遂大敗之 發火炮 焚賊船十七艘”

대가 화약병기로 왜구의 선박을 ‘불태운’[焚, 燒]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적선을 불태우는 데 사용된 것이 과연 어떤 형태의 화약병기였을까 하는 지점이다.⁴⁴⁾

이에 대해서는 먼저 최무선 관련 사료에 언급되는 화통(火桶)을 조선 후기 현종 대에 간행된 『紀效新書』의 조선 내 판본(이하 편의상 ‘조선본’으로 칭함)⁴⁵⁾에 기록된 ‘화통(火桶)’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던져 적선을 분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 『기효신서』 조선본에 언급되는 ‘화통(火桶)’은 개당 화약을 5근씩 사용하고 1말들이 크기의 목제 외피를 가진 대형 병기로서 투척[擲]하여 사용하며, 분리상태로 두었다가 전투 때 조립하여 사용하는데,⁴⁶⁾ 조립 전의 목제 외피와 내부의 완(碗)을 세는 데 척(隻) 혹은 개(個)를 사용하여 날개 단위로 숫자를 세고 있는 장비이다.⁴⁷⁾

그러나 여말선초 당대를 기록한 사료에서 나타나는 기록들을 종합하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시기의 화통(火桶)⁴⁸⁾은 금속으로 주조[鑄]하여 제작하였으며, 자루[柄]로 숫자를 헤아리고⁴⁹⁾, 화살 등의 발사체를 발사[放]하는⁵⁰⁾ 금속제의 유통식 화기였다. 또한 이는 휴행 가능한 개인화기로서, 조선 초의 운용기록에 따르면 육전에서는 그 사용자가 궁수와 같은 열에서 사격을 담당하였다.⁵¹⁾ 이러한 서술상의 어긋남을 감안해 보자면 여말선초의 화통을 『기효신서』 조선본에 등장하는 그것과 동일한 병기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은가 한다.

44) 이와 관련된 논의 부분은 대체로 ‘오기승, 「운용사례를 통해 본 고려 말 화통(火桶)과 화포(火砲)의 실상」, 『군사』1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3.’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45) 『紀效新書』에는 다수의 판본이 존재하는데 중국의 『四庫全書』에 수록된 판본과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증간하여 간행했던 소위 ‘朝鮮本’은 별개의 판본이다. 『四庫全書』에 수록된 18권 판본은 嘉靖 39년(1560)에 14권 체제로 간행되었던 초간본을 대폭 수정 보강하여 1565년에 간행한 것으로 ‘嘉靖 45년본’으로 칭하며, 王世貞이 가지고 있던 필사본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왕세정본’이라고도 불린다. 한편 현전하는 조선본 기효신서는 萬曆 16년(1588) 14권으로 간행된 ‘李承勳本’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독자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別集 4권을 더해 18권으로 구성되어 조선 현종 5년(1664)에 새로 간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사고전서 수록본(이하 『기효신서』 사고전서본)과 조선본의 권수는 18권으로 같아 얼핏 혼동하기 쉬우나, 실제로 그 구성 및 내용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국방군사연구소 영인, 『紀效新書』上, 국방군사연구소, 1998, 1-5쪽; 노영구, 「朝鮮 增刊本 《紀效新書》의 체제와 내용」, 『군사』3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107-108쪽; 123-125쪽)

46) 『紀效新書』 朝鮮本 卷12 舟師編 火桶製(국방군사연구소 영인, 『紀效新書』下, 국방군사연구소, 1998, 139-140쪽)

47) 『紀效新書』 朝鮮本 卷12 舟師編 授器解(국방군사연구소 영인, 『紀效新書』下, 국방군사연구소, 1998, 87쪽, 92쪽), 여기서 화통은 8척 단위의 편제 중 1호선과 2호선에만 적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8) 최무선 줄기에는 火桶, 기타 여말선초의 기록에서는 火桶, 火箭, 火筒 등이 혼용된다.

49) 『太宗實錄』 15年 3月 癸丑, “命收亡寺鍾 鑄火桶”; 『世宗實錄』 5年 1月 辛卯, “兵曹啓 依傳旨 唐小火桶一百二十五柄已鑄成 然本國所鑄 稱唐小火桶未便 今鑄火桶 除唐字稱小火桶 前鑄小火桶稱中小火桶 從之”; 『世宗實錄』 30年 7月 壬寅, “昔政丞何崙力關佛氏 其時有壞銅佛鑄火筒者”;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 京都 下 軍器寺 「火藥庫記」, “(前略)...中小火桶加一萬三千五百柄”

50) 『太宗實錄』 및 『世宗實錄』에 나타나는 화통 사격[放] 관련 주요 기사는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 6年 5月 癸巳, “試放火桶于露渡”; 『太宗實錄』 15年 3月 癸亥, “幸東郊觀放火桶”; 『太宗實錄』 15年 4月 戊辰, “且令火桶軍放火以觀 能者賞之”; 『太宗實錄』 16年(1416) 3月 庚申, “觀放鷹于東郊 因放火桶以觀之”; 『太宗實錄』 16年(1416) 5月 己亥, “命軍器監放火桶 關風氣也”; 『世宗實錄』 2年(1410) 閏1月 壬申, “上王命於箭串牧場外擇地 爲習放火桶處”;

51) 『世宗實錄』 15年(1433) 7月 乙卯, “凡軍入險地狹徑 魚貫而行 則每隊五十人 先防牌一人 次槍長劍中一人 次火桶弓手中一人 以此爲次 步卒三十人先行 騎槍騎射二十人次之”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고려 말 화약병기를 이용한 해전이 화약병기로 적선을 불태우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포해전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화포를 이용하여 그 배를 불태웠다’[用火炮 焚其船]⁵²⁾, 혹은 ‘화약병기를 발사하여 그 배를 모두 불태웠다’[發火具 盡燒其船]⁵³⁾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관음포해전에서는 ‘화포를 발사하여 적선 17척을 불태웠다’[發火炮 焚賊船十七艘]⁵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전투 시점 한참 뒤인 1430년(조선 세종 12) 박안신의 발언에서 던지다[投]⁵⁵⁾가 단 한 번 언급된 사례를 제외하면 여타 사료에서는 대체로 이를 사용[用] 혹은 발사[發]한 것으로 적고 있어 ‘발사를 통해 적선을 소각할 수 있는 무기’의 존재를 상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원나라에서는 13세기에 이미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유통식 화기에서 고형 탄체(solid projectiles)를 발사하는 형태의 화기가 등장하였던 바 있지만, 수전에서는 14세기 중엽 이후까지도 화약의 연소성능에 의존하는 화약병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던 것을 기록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는 위력의 한계로 인해 인마살상 이외에 구조물의 파괴에는 유통식 화기를 활용하기 어려웠거나,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수상전에서는 안정적인 포격이 어려웠던 것 등이 그 원인으로 짐작된다.

이후 16세기 후반에 출간된 『기효신서』의 사고전서본에서도 인화물질과 함께 화약의 연소 화염을 방사하여 불타기 쉬운 적선의 돛 등을 태워 선박의 화재를 노리는 비천분통(飛天噴筒)을 함대함 전투에서 비할 바 없을 정도로 극히 효과적인[莫救比 極妙極妙] 무기로 극찬하며 언급하고 있는 기록이나⁵⁶⁾, 『宣祖實錄』의 1600년도 기록에서 통제사(統制使)가 중국에서 도입된 분화통(噴火筒)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던 내용⁵⁷⁾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감안해 보면 중국에서는 연소형 화약병기가 대략 16세기 말에 이르기까지도 수상전에서 여전히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여말선초의 사례로 돌아와서, 만약 당시의 해전이 원거리 전투 위주였다면 아

52) 『高麗史』 卷114, 列傳27 羅世, “世等至鎮浦 用茂宣所製火炮 焚其船” 『高麗史節要』의 관련 기록도 최무선의 화포를 처음으로(始) 사용했다는 묘사를 제외하면 이와 거의 같다; 高麗史』 卷126, 列傳39 邊安烈, “羅世沈德符等 至鎮浦 用火炮 焚其船”

53) 『太祖實錄』 4年(1395) 4月 壬午, “乘船齎火具直至鎮浦 寇不意有火藥 聚船相維 欲盡力拒戰 茂宣發火具盡燒其船”

54) 『高麗史』 卷113, 列傳26 鄭地, “發火炮 焚賊船十七艘”

55) 박안신의 진술 그대로라면 이는 진포, 관음포와는 별개의 해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投’의 용례가 이것 한 번 뿐이고, 던져서 적선을 불태울 수 있는 병기에 대한 기록을 여말선초의 기록에서 추적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이거나 혹은 선내에 질려포(蒺藜砲) 등을 던져 인마를 살상한 것이 와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6) 『紀效新書』四庫全書本 卷18, 戰船器用說, “遠則只用飛天噴筒 近則只用埋火藥桶”; 同 飛天噴筒, “莫救比 極妙極妙 萬方效策”, 朝鮮本에서는 같은 장비를 조선에서 자체적으로 증간한 부분에서 분통(噴筒)이라는 명칭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분통이 존재하던 명과 달리 조선에서는 『기효신서』를 통해 비천분통 하나만이 소개되었기에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 있어서도 그 효용을 극찬하는 사고전서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함상 포격무기가 발달하여 타격력만으로도 충분히 적선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16세기 이후 조선수군의 상황이 반영되었던 영향이 아닌가 한다.

57) 『宣祖實錄』 33年(1600) 6月 癸巳. 당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이시언(李時言) 이었다.

마도 최무선이 개발한 유화(流火), 주화(走火) 등의 로켓 병기가 이를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경우 당시 로켓 병기 탄도의 불안정성 및 요동이 심한 해전의 특성상 명중률 문제를 도외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결국 어느 정도 근접한 상태에서 화염으로 적선을 소각할 수 있는 화약병기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자면 지금까지 구체적 고찰이 없었던 최무선 졸기의 ‘화포(火砲)’⁵⁸⁾를 곧 근접전에서 적선에 화염공격을 가했던 주체로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는 분통(噴筒)과 같은 부류의 화염방사식 무기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전근대 중국에서의 화약병기 발달 흐름을 보면 원통 등에 담은 화약을 연소시켜 그 화염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는 12세기경 화창이 등장한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운용되어 오고 있었다. 또한 원말명초의 기록 및 명대의 병서인 『기효신서』의 중국 측 판본이나 『武備志』등을 참조해 보면, 화약 소모량이 많은 대신 화약의 연소력을 이용하여 화염을 방사해 근접전에서 상대 선박을 소각할 수 있는 무기가 선박 간의 근접전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무선이 화약병기를 도입하고자 한 배경 역시 해전에서의 우세 확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고려 말의 해전에서 선박 간 근접전으로 ‘적선을 불태운’ 무기 역시 중국에서도 사용되던 이러한 부류의 화약병기로 추정되며, 앞서 적은 대로 최무선 졸기에 개별적인 무기의 명칭으로서 언급된 ‘화포(火砲)’가 곧 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만 안정적인 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왜구 선박의 기동을 봉쇄하고 등선육박을 막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빠른 검선 외에도 안정적인 교전거리 확보를 위해 적선의 접근을 밀어내는 거철(拒鐵)과 갈고리를 사용해 적선을 잡아두는 구철(拘鐵)을 병행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⁵⁹⁾

이를 종합하여 당시 해전의 양상을 다시 추측해 보면 검선의 방해기동 및 거철과 구철 등을 활용하여 왜구의 선박 기동을 제약하는 한편 적절한 교전거리(왜구의 등선육박이 어려우면서 아군의 화약병기가 운용 가능한 거리)를 먼저 확보하고, 이 상태에서 소각용 화약병기와 그 운용인원을 싣고 있는 신형 누선들이 화염방사를 통해 인화하기 쉬운 돛 등을 공격하여 적선을 소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 질러포(蒺藜砲)를 통해 철질려(鐵蒺藜)를 흩뿌려 목표 선박 내 인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방법도 병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58) 『太祖實錄』에 실린 최무선의 졸기에서 최무선이 제작했다고 알려진 화약병기를 나열하는 도중에 육화석포, 신포 등 다른 병기들의 이름과 아울러 ‘火砲’가 따로 병렬되어 나열되고 있다. 즉 당시 ‘火砲’라는 단어에는 화약병기 전반을 지칭하는 용법 이외에 개별 병기를 지칭하는 용어로서의 ‘화포’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以茂宣爲提調官 乃得修鍊火藥 其具有大將軍 二將軍 三將軍 六花石砲 火砲 信砲 火筒 火箭 鐵翎箭 皮翎箭 蒺藜砲 鐵彈子 穿山五龍箭 流火 走火 觸天火等名)

59) 고려 말 수전에서 거철(拒鐵)과 구철(拘鐵)을 활용한 전술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주요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임용한, 「고려 후기 수군 개혁과 전술변화」, 『군사』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신성재, 「고려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1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5. 결론

고려는 화약과 화약병기라는 새로운 기술체계를 도입하고 화통도감과 해도원수 지휘 하의 신예 주력함대라는 조직,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조직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전술을 바탕으로 화포(火砲) 등을 활용하여 적 함대를 불사르고 1380년(우왕 6)의 진포해전(鎭浦海戰) 및 1383년(우왕 9)의 관음포해전(觀音浦海戰) 등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는 앞서 언급한 일련의 승리를 통해 왜구에 대한 해상 요격이라는 시도를 성공시키고, 왜구를 상대로 하는 해상전투의 주도권을 상당 부분 고려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었다. 이후 화약병기를 탑재한 함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의 해상전력은 더욱 확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며⁶⁰⁾, 이후 1389년(창왕 2)에는 요격을 넘어 14세기 왜구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였던 대마도를 직접 공격하고 그 함대를 파괴하여 왜구의 침입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14세기가 끝나가면서 동아시아의 전쟁 상태는 전체적으로 종식되기 시작하였다. 북방에서는 1388년 토구스 테무르[脫古思帖木兒]의 암살과 함께 북원이 내분으로 한 차례 무너지면서 북방에서의 대치가 한동안 잦아들고, 중원과 요동은 명의 통제 하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남쪽에서도 1392년 일본의 남북조시대가 종식되면서 왜구의 본거지가 속해 있는 규슈 지역 또한 규슈 탐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의 통제 하에 제압되었다. 이후에 여말선초의 국경과 해안에서 분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 14세기 후반과 같은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왜구 침입은 한동안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14세기 후반 한반도와 중국 해안까지 아우르는 영역을 무대로 창궐하였던 왜구의 대규모 준동은 해안지대를 위시한 고려의 중남부 지역 다수를 장기간 전쟁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고려는 이들에 대한 해상 제압을 목표로 삼고 기술과 조직과 사람을 연계하여 동원하는 지난한 과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안변(安邊)을 도모하였으며, 결국 해상전력의 강화를 통한 역지력을 확보함으로써 14세기 전쟁 상태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동란이 온전히 잦아들 때까지 국가의 구심력을 유지하고 국내를 수습해 나갈 수 있었다. 이에 한반도의 해안지대는 왕조 교체 의 충격 속에서도 점차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60) 관음포해전이 있던 1383년 말에는 정지를 “海道都元帥 楊廣·全羅·慶尙·江陵道都指揮處置使”로 임명하였는데(『高麗史』 卷113, 列傳26, 鄭地), 이는 지방수군을 직접적으로 해도수군 총지휘자의 군령권 아래 편제하여 하나의 기동함대가 아니라 전체를 통합하는 수군으로서 운용할 수 있게 하려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도통사가 전 지역의 수륙군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384년에는 해도원수와 별도로 도통사인 최영이 직접 화포를 장비한 함대를 추가적으로 건조하고 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高麗史』 卷113, 列傳26, 鄭地, “都統使崔瑩造戰艦 備水戰 加以火炮 其慮周矣”)

「고려 말 해상활동을 통한 왜구 제압과 안변(安邊) 모색 -기술, 조직, 사람-」에 대한 토론문

최봉준
가톨릭대학교

이 글은 고려말 화약 제조 기술의 도입, 화약 제조를 위한 기술자 집단의 조직, 화포 운용과 전술 등을 통해 고려가 왜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하는 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글에서는 화약제조 기술의 도입시기를 공민왕대로 보고 최무선이 화통도감을 설치하는 시점에 화포를 이용한 전술과 함께 기술자집단까지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즉, 화약 제조 기술과 화포 운용술, 그리고 이를 水戰에서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 전략과 전술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추론해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려말 화통도감의 설치는 단순히 화약 무기의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습득과 사용 및 운용과 응용까지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논의만으로도 연구사적 의의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보다 명확한 서술과 함께 독자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다. 토론자는 고려시대 사상사 전공자로서 글의 내용과 관계된 소양이 전혀 없는 문외한에 불과하다. 필자 선생님의 의도나 연구성과를 파악하지 못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한다.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1. 화약과 화포의 실용화 문제: 화약제조에서 화포운용술까지

1) 최무선과 종합적 기술 습득의 관계

본문 4쪽 하단에는 『고려사』에 기록된 1377년(우왕 3) 10월 화통도감 설치 관련 기사(B)와 『세조실록』 1456년(세조 2) 3월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상소문 중 일부(C)가 인용되어 있다. 5쪽 첫머리에는 『태조실록』에 기록된 최무선의 전함 운용 기술 관련 사료(D)가 직접 인용되어 있다. 내용을 종합하면, 최무선은 화약의 제조, 화포 제작 및 운용, 화약과 화포의 해전에서의 적용과 응용까지 화약과 화포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쪽 하단의 A-1, 2를

살펴보면, 4쪽 상단의 내용과 같이 1372년과 1373년 시점에 고려는 화약과 관련된 기술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377년 화통도감을 설치한 것은 화약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화약제조와 무기 제작 기술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반증하는게 아닐까 생각된다. 본문의 내용과 『고려사』나 실록 등에서 화약 제조와 무기 제조 기술을 얻기 위해 고려 정부가 했던 노력이 거의 기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화약과 관련된 모든 기술은 최무선의 개인적 노력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가의 지원 없이 과연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전략과 전술 운용은 화약과 무기 제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과연 모든 기술과 운용법을 최무선 단독으로 익히는 것이 가능할까?

2) 화약제조 기술자 집단과 화통도감

3장에서는 화약제조와 관련된 기술자 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토론자로 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화약기술자 집단은 양인이자 관료 최무선과 나머지 家童, 즉 노비로 이루어진 집단 사적 소유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寺奴 출신의 화통방사군도 있었다. 신분적으로 보면 화약제조와 운용의 실무는 모두 노비에 의해 이루어진 셈이며, 두 노비 집단의 소유권 역시 다르다. 국가에서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법으로 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적 소유물을 그대로 조직에 적용하고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시급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기술 집단에 주목한다면, 화약 관련 기술은 노비 집단에 의해 전승된다는 문제도 있어 보인다. 주 23)과 같이 최무선 계열 외에 독자적인 화약병기 개발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후 신기전이나 비격진천뢰 등과 같은 화약병기는 최무선 계열의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이 추론한다면 화통도감은 최무선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사적 소유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화통도감은 오랫동안 면밀하게 준비하여 만든 기관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의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 해전에서 전략과 전술의 문제

해전에 화포를 적용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은 화약 제조 및 화포 제작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본문에서는 최영과 정지의 전략을 소개하고 이후 정지의 전략이 자리를 잡아 나갔다고 설명하였다. 최영은 대규모 조직을 통한 철저한 방비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며, 훈련과 축성, 전함 건조 등 민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정지가 선택한 전략은 해안가 주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며, 개경 주변에 이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정지의 전략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가 생각할 때, 정지의 전략이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개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왜구가 침략을 하는 경우 대응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8쪽의 주 35)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경 인근에 기지를 두게 되면, 서해로 북상하여 예성강으로 올라가는 선단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남해안에 상륙하는 왜구를 방어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정지의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한계점은 없었을까? 의문이다.

본문에 서술된 정지의 전술의 핵심은 누선과 검선의 역할 분담이 아닐까 생각된다. 누선이 화력을 통해 적을 제압하는 것이라면, 검선은 빠른 속도로 적을 에워싸 목표한 지점으로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왜구들이 누선에 도선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역시 검선의 역할이다. 화포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선이 화력을 집중시켜 적선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선이 빠르게 움직이며 협력하여 적선을 원하는 곳으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을 읽으며 들었던 또 하나의 의문은 실제 진포해전에서 검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9~10쪽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진포해전 당시 왜선은 500여척이 굽은 줄로 배들을 모두 묶었다. 언뜻 보기에 왜구들은 기동력과 등선을 포기하고 규모의 장점만을 노린 전술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검선을 운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기동력이 떨어진 왜선을 작은 선박으로 원하는 지점까지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모든 배가 굽은 줄로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검선이 적선 사이를 오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포해전 당시 검선의 운용은 어떻게 했을 것으로 추정하는지 보충 설명을 바란다.

▶ 제2발표 ◀

임진전쟁과 피난, 그리고 의례

: 왕실과 사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토론: 김성희(국사편찬위원회)

임진전쟁과 피난, 그리고 의례 : 왕실과 사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혜
광주과학기술원

목 차

서론

1. 피난 과정에서의 의례 시행 양상
 2. 전란 이후 비상시 의례에 관한 인식
- ### 결론

서론

조선은 건국 이후 국가·왕실의 의례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사족 가문의 의례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태조 원년 7월, 즉위교서를 통해 국가의례 측면에서는 고대 제도에 맞추어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사족 의례에 있어서는 관혼상제로서 인륜을 두텁게 할 것을 공식화하였다.⁶¹⁾ 이후 긴 시간의 연구를 거쳐 『국조오례의』를 정비하였다. 그런데 의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만들었고, 경전에 대한 이해방식에 따라 서로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실이나 여러 사대부 가문의 의례는 연구를 지속하게 되었다. 조선의 의례 발전 양상에 대해 17세기를 예학의 절정기로 보는 선행연구가 있었지만,⁶²⁾ 한편으로는 조선의 국가의례와 가례의 발전과정을 15세기까지는 예제의 수립기, 16~17세기 전반은 사가례 검토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를 국가전례 검토기, 18세기 이후를 예제 확립기로 보기도 하였다.⁶³⁾

61)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7月 28日 丁未.

62) 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예학 발전의 양상에 대한 전체적 연구사 정리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장동우, 2011, 「朝鮮時代 家禮 研究를 위한 새로운 視覺과 方法」, 『한국사상사학』 39.

63) 장동우, 2013,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134 쪽. 그리고 조선에서의 『주자가례』 도입과 이해 과정에 있어서는 14세기 『주자가례』가 도입되고 15세기의 학습기, 16세기의 발아기, 17세기의 심화 및 갈등 시기를 거치고 18세기의 절정기에 이르고 19세기에 숙성되어 20세기까지 지속해서 연구되면서, 15세기 丘濬의 『家禮儀節』에서 연구가 정체된 중

선행연구를 종합하자면, 사대부 가례의 경우 『주자가례』와 『의례경전통해』의 보급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대략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론적 집대성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진전쟁의 발생 전후에 해당하는 16세기 후반의 경우 喪·祭禮를 중심으로 의례 시행 양식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되었고,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를 문답 혹은 고증 형식의 저술로 보여 주기도 하였다.⁶⁴⁾ 즉, 15~16세기는 예제를 도입하고 연구하면서 예학의 기반을 다져 가던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임진전쟁이라는 경험이 조선의 의례 이해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것이다. 임진전쟁은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7년이라는 긴 시간의 경험은 조선시대의 의례적 경험이나 이해 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임진전쟁 시기에 의례가 시행되었던 여러 사례를 검토한 연구는 상당수 확인할 수 있으나, 임진전쟁이라는 사건이 조선의 예학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많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약 7년의 전쟁기간은 사족이나 여러 백성이 정상적인 유교 의례를 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며 총체적으로 예법의 해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놓였는데, 정부와 사족들은 전란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예제의 정비와 회복에 주력하여 『주자가례』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四禮書의 편찬이 촉발되었다는 분석이 있다.⁶⁵⁾ 이는 조선 중엽 예학의 발전과정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당시에 발생한 가례서를 목록화함으로써 당대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청사진을 마련해 준 연구이다.

임진전쟁 과정에서 국가 기록이 대거 훼손되었기 때문에 국가의례의 시행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족 가문의 사례 역시 전국 각 지역의 일정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실록』과 같은 관찬사료와 현전하고 있는 피난 일기를 바탕으로 전란기의 의례 시행 양상을 검토해내면서 파천 중인 왕실의 경험은 물론, 백성, 특히 사족들이 지역 혹은 계층별로 다양한 의례 시행 양상을 보였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⁶⁶⁾

하지만 전쟁이 조선 사회에 미친 전체적인 영향을 기반으로 조선의 국가 의례와 가례를 해석한 연구가 있을 뿐, 전쟁 경험이 의례 자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국가 혹은 중앙 정부에서 파악한 백성들의 상황과 피난 중인 백성들이 실제로 처한 상황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국에 비해 조선에서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주자가례』 연구를 개성 있게 발전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장동우, 2011, 위의 논문.

64) 16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진행된 『주자가례』에 관한 이해 양상의 흐름과 특징에 관한 정리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 장동우, 2011, 위의 논문, 151~153쪽.

65) 고영진, 1995, 위의 책, 171~248쪽.

66) 지금까지의 임진전쟁 연구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최신 연구사 정리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경태, 2024, 「2000년대 이후 임진왜란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08. 피난기 일기자료의 현전 양상에 대해서는 최은주, 2020,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현황과 傳存 양상」, 『한국민족문화』 77 ; 이성임, 2019,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9.

두고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제 수립기를 거쳐 학습기로 나아가고 있었던 조선 왕실과 사족 계층의 사람들이 과연 비일상적 전시상황에서는 어떻게 예를 다하려 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경험이 전란 이후의 의례 양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단편적으로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사람마다 전쟁을 경험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했기 때문에 한 논문에서 모든 사례를 다룰 수는 없었다. 따라서 왕실과 백성의 피난 양상 가운데 상례와 제례에 관한 이해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과연 조선의 예제 발전 과정에서 전란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피난 과정에서의 의례 시행 양상

1) 전란을 경험한 왕실과 사족의 의례

임진전쟁의 상황 가운데 왕실에서는 종묘의 신주와 사직의 위판을 모시고 파천하면서도 약식으로나마 예를 다하였고, 동시에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된 명군에 대한 외교적 의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왕실과 정부에서는 선왕과 선왕비의 혼령이 담긴 신주를 파천시키면서 예를 다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종묘는 전란 중에 모두 소실되었다. 종묘 신주라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정부 피난의 시작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만장일치의 의견 하에 종묘 신주가 수호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종묘의 신주와 사직의 위판을 옮기다가 위기에 처할 것을 염려해 일단 땅에 매안하고 나중에 되찾자는 견해와, 어렵더라도 끝까지 신주를 모시자는 견해가 거듭해서 충돌했다. 결국 종묘의 신주와 어보, 사직의 위판은 보존될 수 있었는데 이는 종실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의 노력 때문이었다.⁶⁷⁾

그리고 파천하는 시기에도 종묘 신주를 단순히 모시고 다녔을 뿐 아니라 의례 역시 간소하게라도 진행되었다. 파천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종묘 신주가 모처에 임시로 봉안되었고, 종묘 제향을 어떻게 권도로 대처할 것인지도 논의되었다. 하지만 儀物을 갖추지 못한 균색한 형편이었기에 大享은 커녕 朔望·俗節祭조차도 지내기 어려웠다.⁶⁸⁾ 이 과정에서 제향 없이 배례를 시행하는 展謁이나, 신주를 임시로 봉안할 때의 慰安祭, 새로운 물품을 얻었을 때의 薦新, 승전의 경사가 있을 때의 告廟가 시행되거나 거론되었다.

선조는 평양이 함락되자 의주로 파천하여 머물다가,⁶⁹⁾ 이후 분조를 이끌던 세자(광

67) 신진혜, 2018,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240.

68) 『宣祖實錄』 卷26, 宣祖 25年 5月 14日 癸酉.

69) 『宣祖實錄』 卷27, 宣祖 25年 6月 19日 丁未 ; 6月 22日 庚戌.

해군)와 다시 조정을 합치게 되면서 종묘·사직의 신주와 위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알의 예를 갖추었다. 1월 18일(계유)에 선조는 의주를 출발하여 1월 20일(을해) 저녁에 정주에 도착하였다. 영변에서 먼저 정주에 도착해있었던 세자가 대가를 영접하였고, 선조는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사직의 신주와 위판에 대해 전알하고 四拜禮를 행하였다.⁷⁰⁾

고묘는 평양과 경성이 수복되었을 때 거론되었는데, 선조 26년 의주에 있을 때 朝·明연합군에 의해 평양이 수복되자, 예조에서 길일을 가려서 평양 수복의 경사를 종묘·사직에 고할 것을 건의했다. 이때 예조에서 근거할 문건이 없어서 종묘·사직·영녕전의 제문에 열성과 왕후의 휘호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 제사 하루 전에 獻官이 봉안한 廟庭에 肅拜하고 봉심한 뒤에 제문에 묘호를 쓰는 것으로 변통하였다.⁷¹⁾ 이후 선조 26년 4월 24일(무신) 영유에 있을 때 경성을 수복하게 되었고 5월 2일(을묘)에 이를 종묘·사직의 신주 앞에 고하였다.⁷²⁾

선조가 머무르는 행재소에도 종묘·사직의 신주와 위판을 봉안해두는 장소를 정해서 ‘임시 종묘’를 마련하였다. 선조는 파천 과정에서 위안제나 천신을 시도하며 효를 다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권위와 정통성이 여전함을 확인하려는 행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식 수행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래 담당했던 관원이 부재하거나 절차를 검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시행하지 않았다.

피난을 겪은 백성들의 사례를 전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피난 시기나 전란 직후 기록을 남긴 사족의 사례를 통해 전란 중에 예를 준수한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인동지역의 張顯光(1554~1637)은 피난 과정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특히 본인이 경험한 상례와 제례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였기에 전란기 의례 시행의 실재를 짐작할 수 있다.

장현광은 4월 20일에 일본군이 인동에 근접했다는 소문을 접하고 모친[先妣]의 목주를 모시고 피난을 떠났는데, 피난 도중에도 신주에 대한 예를 다하였다. 자리 잡은 언덕에 잡초를 베고 우막을 만들어 옆에 돌을 괴어서 모친의 신주를 안치하고 아침저녁마다 가지고 있는 식량을 올렸다.⁷³⁾ 왕실에서 정주할 때마다 종묘 신주를 꺼내 모셨듯이, 장현광도 다급한 상황에서 목주를 붓짐에 넣어두지 않고 자리를 마련하여 모셨던 것이다.

장현광은 피난하는 중에도 머무르는 지역에서 소상·대상, 담제를 지내는 정성을 보였다. 선조 25년(1592) 9월에 이르러 장현광은 누이가 우거하는 甌山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이어서 일본군이 이른 적이 없었다. 자형의 도움으로 제수를 마련하여 소상을 지냈고,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정월 元日에도 누이

70) 『宣祖實錄』 卷34, 宣祖 26年 1月 18日 癸酉 ; 1月 20日 乙亥.

71) 『宣祖實錄』 卷34, 宣祖 26年 1月 10日 乙丑 ; 1月 11日 丙寅.

72) 『宣祖實錄』 卷37, 宣祖 26年 4月 24日 戊申 ; 卷38, 宣祖 26年 5月 2日 乙卯.

73)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4월 21일.

집안에서 제수를 마련해주어서 뜻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현광은 모친의 禫祭를 위해 외가 친척인 진보현감을 찾아가 제수를 구하였는데, 현감은 祭物을 주어 도왔다.⁷⁴⁾ 장현광의 경우는 혈연을 기반 삼아 지방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李文樾의 『默齋日記』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가문의 요청이 있기 전에 관청에서 미리 제사 물품을 보내 助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⁷⁵⁾

장현광은 조상에 대한 속절제나 천신, 성묘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선조 26년(1593)에 잠시 인동에 있는 묘를 살폈고, 선조 27년(1594) 3월에는 성주에 있는 여러 묘에 성묘하였다.⁷⁶⁾ 집안의 묘를 살필 뿐만 아니라 선조 27년 6월 白雲書院을 찾아가 향을 올리고 배알하기도 하였다.⁷⁷⁾ 그리고 전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장현광은 本宗에 대한 제사뿐만 아니라 外祖 및 후사가 없는 가족에 대한 제사까지 돌보았는데,⁷⁸⁾ 이러한 모습은 상주 지역의 趙靖(1555~1636)이나 함양 지역의 鄭慶雲(1556~?)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정은 피난시기 남의 집에 있으면서도 외조부나 부친의 제사를 거르지 않았고 외조모의 초기와 대상도 치렀다. 그리고 정경운은 가능한한 부모와 형, 조부와 외조부 등의 기일을 챙기려 했다.⁷⁹⁾

일부 일기를 바탕으로 확인한 피난시기 혹은 강화교섭 시기의 제사 시행 사례로써 이것이 임진전쟁기의 ‘일반적인’ 경향이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약식으로 시행했다 할지라도 상례나 제례를 소홀히하지 않았던 사례는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왕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도가 우위에 있는 왕실·정부의 제사 대상, 이를테면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향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는 그에 비해 하위에 있는 제사가 저지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문묘나 향교·서원의 사례로 짐작할 수 있다. 선조가 의주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 先聖의 묘가 있으니 알현하고 제사를 지내고자 했으나 사간원에서 종묘·사직에도 예를 갖추지 못했는데 문묘의 선성을 먼저 제사하는 것은 체통에 맞지 않으니 관원을 보내 대신 고할 것을 청하였다.⁸⁰⁾

정경운의 『고대일록』에 기록된 향교에서의 석전제에 관한 기록 역시 흥미롭다. 선조 25년 8월 7일에 巡察使가 모든 고을에 대해 ‘종묘와 사직의 제사도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고을이라해도 釋菜를 권도로 중지하라’는 명령

74)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5년 10월 일 미상 ; 선조 26년 1월 1일 ; 선조 26년 10월 일 미상. 신진혜, 2020, 「임진왜란기 張顯光(1554~1637)의 피난 중 喪·祭禮 시행양상」 『韓國實學研究』 40, 481~488쪽.

75)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대부가의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배려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김경숙, 2000,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李文樾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 35~36쪽.

76)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7년 3월 일 미상. 乃往星州歷拜諸墓 入巖浦 蒿菝擁宅 不可披入 既入開房戶 有白骨亂積 卽閉而出.

77)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7년 6월 일 미상.

78) 신진혜, 2020, 위의 논문, 504~505쪽.

79) 정해은, 2007,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현실』 64, 95~97쪽.

80) 『宣祖實錄』 卷34, 宣祖 26年 1月 14日 己巳 ; 1月 15日 庚午.

을 전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⁸¹⁾ 이후 함양의 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었던 선조 29년 7월 28일에 이르러 釋奠祭를 지내려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경운은 당시 석전제를 지내기위해 향교에 갔는데, 신주는 온전했지만 祭服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齋戒만 했다고 기록하였는데, 癸巳年 7월에 監官이 하인과 공모하여 제복과 관아의 물건을 훔치고 불을 질렀기 때문이라는 상황을 전하였다. 사족들은 전란 당시 가문의 신주 뿐만 아니라 서원의 위판을 보존하려 노력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유재란 발생당시 정경운은 선조 30년 8월 陳慶胤과 함께 남계서원의 位版을 묻은 후 피난했고, 선조 32년에 이르러서야 묻어두었던 위판을 꺼내어 봉안하였다.⁸²⁾

사족의 경우 가문의 의례나 혹은 한 고을의 의례를 수행하는 것에 그쳤으나 왕실과 정부에서는 공적 영역에 놓인 의례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전란의 위기 속에서 국가·왕실의 상징체에 관한 의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외교적 의례였다. 국왕이 파천 중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전란을 타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명나라의 파견 사신이나 장수에 대한 상견 접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에서 장수를 거둬 파견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⁸³⁾ 이들을 접견하고 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승정원에서는 중국의 장수 접대를 주도하는 인원을 두고 평상시 중국 사신이 올 때 설치되는 迎接都監과 같이 준비할 것을 아뢰었고, 비변사에서는 중국에서 파견되는 장수를 접대하는 것은 중국 사신이 올 때의 事目에 의거할 것을 아뢰었다.⁸⁴⁾

선조 25년 12월 요동에 도착한 제독부제독 李如松을 동부승지 沈喜壽를 보내 영접하였고, 동지중추부사 閔汝慶을 보내 문후하였다.⁸⁵⁾ 실제 이여송을 영접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龍灣館에 도착하여 대문 밖에서 영접하고, 揖讓한 다음 堂에 올라 再拜禮를 행하였다. 이어서 이여송에게 다례와 주례를 행했는데, 이 역시 연조정사의의 절차에 따라 다례와 주례를 시행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명 제독을 일상시의 명 사자를 영접하는 순서로 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⁶⁾

복잡한 외교적 상황 속에서 선조는 명나라에 대해 파견되는 사신뿐만 아니라 장수들에 대해서까지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면서 원조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 『운천호종일기』를 통해 선조가 이여송과 양원에게 사은배례는 물론 직접 잔을 올리는 예우까지

81) 『고대일록』 권1, 임진 8월 7일.

82) 기록에 따르면 긴 시간을 흠 속에 묻어두었음에도 상한 곳 없이 분칠한 면이 새로 만든 것 같았고 字劃도 깎인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 정경운은 ‘하늘의 도움과 귀신의 꾸짖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며 위판이 잘 보존된 것을 감탄하였다. 『고대일록』 권2, 정유 9월 11일. 권3, 기해 3월 18일 ; 22일.

83) 『宣祖修正實錄』 卷26, 선조 25년 12월 1일 정해.

84) 『宣祖實錄』 卷33, 선조 25년 12월 12일 무술 ; 12월 21일 정미.

85) 『宣祖實錄』 卷33, 선조 25년 12월 19일 을사 ; 12월 21일 정미.

86) 『宣祖實錄』 卷33, 선조 25년 12월 25일 신해. 이는 『국조오례의』 영조서의迎詔書儀의 빈주례賓主禮 단계에서 사자와 임금이 배위에서 상호 국궁 재배례를 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진혜, 2024, 「『운천호종일기』에 수록된 임진전쟁기 선조의 외교 의례 시행과 의미」, 『국학연구』 53, 267~272쪽.

더하면서 절박한 뜻을 전했다. 조선은 당시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었고 선조는 국왕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동원하여 명나라의 원조를 끌어내고 유지하려 했던 것이다.⁸⁷⁾ 그리고 조선에서 참전했다가 전사한 명군을 위한 제사나 기념 의례를 시행한 것을 통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⁸⁸⁾ 이러한 명군에 대한 예우와 접대에 대한 부담은 왕실·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수령과 백성에게도 전가되었다. 한 사례로, 함양 수령은 지역 사족과 함께 강화 교섭기부터 정유재란기까지 긴 시간 명군에 대한 지대를 논의하고 수행하였다.⁸⁹⁾

이뿐만 아니라 한성 수복 이후 대가의 환도를 논의할 때도 선조는 명나라에 대한 외교적 의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환도하는 도중에 명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를 갖출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⁹⁰⁾

예조가 아뢰기를, “황제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뜻으로 대신들과 의논했더니, 迎詔門에 이르러 평시에 조칙을 맞이하는 예와 같이 사은례를 행하고 종묘 앞에 가서 곡림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기도 하고, 車駕가 경성에 도착할 시각의 早晚을 알 수가 없으니 종묘의 곡림부터 행하고 이튿날 태평관에서 사은례를 행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라 하기도 하고, 이미 사신을 보내어 사은하였으니 지금은 굳이 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 도성에 들어가서 어찌 사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사은례를 어찌 곡림한 뒤에 할 수 있겠는가. 사은할 곳과 절차에 대해 밖에서 살펴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는 불에 탄 종묘의 터에 먼저 예를 표할 것을 주장했지만, 선조는 명나라에 대한 사은을 우선시하였고, 결국 선조의 뜻대로 거행되었다. 벽제역을 출발하여 미륵원彌勒院에서 晝停하고 저녁에 정릉동의 행궁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화관에 이르러 황제의 은혜에 사례하는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종묘 앞에 이르러서는 옷을 갈아 입고 백관을 거느리고 곡림하였다.⁹¹⁾

왕실에서는 종묘에 불에 탄 것과 더불어 성종의 능인 선릉宣陵과 중종의 능인 정릉靖陵이 일본군에 의해 훼손되는 변고를 겪기도 했다. 정릉이 파헤치고 선릉도 변고를 당했는데, 재앙이 재궁에까지 미쳤다는 소식이 보고되었다. 두 능을 봉심하였을 때는 이미 선릉은 광중壙中이 비어 있고 정릉은 염습한 옷이 없어지고 옥체는 광중에 가로 놓여있었다고 한다.⁹²⁾ 이에 정부에서는 백관을 거느리고 거애하였고, 개장도감改葬都

87) 신진혜, 2024, 위의 논문, 301~302쪽.

88) 명 장수의 생사당을 세워 현창했던 사례나 명 장수를 위한 조문에 선조가 관심을 기울였던 사례는 정은주, 2022, 「임진전쟁기 明 將官에 대한 接待都監 운영 양상」, 『명청사연구』 57, 209~219쪽.

89) 이선희, 2010, 「임진왜란 시기 咸陽 守營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107~109쪽.

90) 『宣祖實錄』 卷42, 선조 26년 9월 21일 임신 ; 9월 22일 계유.

91) 『宣祖實錄』 卷43, 선조 26년 10월 1일 신사.

92) 『宣祖實錄』 卷30, 선조 25년 9월 27일 갑신 ; 卷37, 선조 26년 4월 13일 정유 ; 卷37,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監을 설치하여 일본군에게 도굴된 선릉과 정릉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였다.⁹³⁾

전란이 소강된 이후 선조는 전란에 대한 책임의식을 표현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책임을 벗고자 전란 중에 능을 도굴한 犯陵賊에 대한 獻俘禮와 같은 의식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가 전란의 책임을 일부나마 벗고자 헌부의례를 시행했다. 선조 39년(1606) 임진전쟁 과정에서 능을 도굴했던 범능적을 전쟁 직후 일본으로부터 인도받아 포로를 바치는 의례인 獻俘 의례를 시행했다.⁹⁴⁾ 추국 과정에서 일본에서 보낸 범능적이 능을 도굴한 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을 처형하였는데, 이러한 상징적 의식을 통해 선조 스스로 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전쟁을 승리로 종결짓게 하는 행위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⁹⁵⁾

일본군에 의해 왕릉이 파헤쳐진 피해는 왕실에서만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장현광은 피난 중에 일본군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새로 만든 듯한 묘를 보면 파헤쳐서 널을 부수고 시신을 옥보인다는 소문을 들었다. 백성들이 피난을 갈 때 재산을 땅에 묻어서 분묘처럼 보였기 때문에 새로 만든 묘를 물건을 묻은 봉분으로 착각하고 이를 파헤쳤고, 그러다가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장현광은 모친을 장사지낼 때 손질한 묘가 새로운 봉분으로 보여 해를 입었을까 걱정했으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⁹⁶⁾ 장현광이 들었던 소문은 비록 한 가지 기록에 불과하지만 전란 당시 이런 일은 상당수 발생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 상황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차이

왕실 사람들과 백성들은 임진전쟁이라는 공통적인 위기를 경험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서 상당히 비슷한 행동양식을 보이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통치이념하에 존재했다해도 상황에 따른 이해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었다. 입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충돌도 있었다.

선조 26년 7월 7일, 전시 상황이었기에 비변사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喪中에 있는 사람을 출사시키는 起復出仕를 요청하였다. 군량관련 업무를 위해 호조검판서 洪聖民(1536~1594)을 기복시키려 했는데 홍성민은 예를 다하고자 거부하였다.⁹⁷⁾ 결국 선조는 홍성민을 기복시키지 말도록 하였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이 충돌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머지않아 상황이 급박해졌을 때 선조는 大小武臣을 모두 기복시켜 전쟁에 종사시켜야 한다는 비변사의 요청을 허락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도 “개인의 상사 때문에 職事를 그만두게 할 수 없으니, 대소무장들

93) 『宣祖實錄』 卷37, 선조 26년 4월 24일 무신 ; 『운천호종일기』, 地卷, 8월 19일.

94) 『宣祖實錄』 卷204, 宣祖 39年(1606) 10月 16日 辛亥.

95) 이에 관해서는 김경태, 2007,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 138, 66~70쪽.

96) 『龍蛇日記』 卷1, 「避難錄」 선조 26년 6월 일 미상.

97) 『宣祖實錄』 卷40, 선조 26년 7월 7일 기미.

모두 기복하게 하고 연해변의 수령이 아니라도 직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은 기복하여 仍任시키도록” 하자는 비변사의 요청을 수락하였다.⁹⁸⁾

전란으로 인해 상장례에 예를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이 예제의 문란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하였다.⁹⁹⁾ 실제로 선조 27년(1594) 2월 선조는 경성의 백성 중에 일본군에게 죽은 사람이 많을 텐데 상복을 입은 자가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며, 法司에서 규찰하여 백성들이 상복을 입게 하라고 전교했다고 한다. 이때 沈喜壽(1548~1622)는 전란이 발생한 이후 喪紀가 문란해져서 어떤 이는 의병이라 핑계를 대고 마음대로 기복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모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평상시처럼 고기를 먹고 있다며 윤리적 기강이 무너졌다고 한탄하였다. 張雲翼(1561~1599)은 居喪하는 자가 고기를 먹고, 기복하면 黑衣를 입어서 점점 오랑캐 풍속에 물들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선조는 “국가에 중대한 관련이 있는 자는 조정에서 기복하게 하였지만 사람들이 모두 상복을 입지 않게 된 것은 자못 괴이한 일”이라 여기며, 일전에 긴급하게 무신과 무장을 기복시켰던 일을 백성들이 상복을 입지 않는 문제와 관련지었다.¹⁰⁰⁾

선조 26년에 허락없이 기복하고 고기를 먹거나 상중에 官倡과 놀았던 관리들, 상중에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을 치죄하여 문란해진 예제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사례를 통해 상례의 와해를 확인할 수 있다.¹⁰¹⁾ 이처럼 『선조실록』에 기록된 사례를 통해서만 당시의 상황을 유추한다면 임진전쟁기에 대체적으로 예제가 문란해졌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바와 같이, 동일시기에 지역과 개인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군에게 쫓기는 극한의 상황에서 예를 변통해서라도 절차를 갖추어 예를 다하려했던 사례가 여러 일기자료를 통해 검토되었다. 따라서 임진전쟁 시기에 윤리기강이 무너지고 예제가 문란해졌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琴蘭秀(1530~1604)의 『惺齋日記』는 비록 내용이 간략하여 소상한 상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피난 중에도 상례를 다했던 사례를 확인하게 해 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임진전쟁 발생 직후였던 선조 25년 5월 22일에 금난수의 딸이 사망했는데, 5월 25일에 성복하고, 6월 1일에 피신하면서도 상구를 챙겼다. 그런데 이동할 때 강물이 불어나서 喪柩를 뗏목에 실어 강을 건넌 다음 소를 빌어서 운반하였는데, 사위와 아들 금경, 금개가 상구를 호상하여 갔다. 이 기록을 통해 딸의 상례를 금난수의 집에서 치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⁰²⁾ 6월 16일에 일본군에게 패했다는 소

98) 『宣祖實錄』 卷40, 선조 26년 7월 18일 경오 ; 권46, 선조 26년 12월 5일 갑인.

99) 고영진, 1995, 위의 책, 175~181쪽.

100) 『宣祖實錄』 卷48, 선조 27년 2월 14일 계해.

101) 이에 대해서는 고영진, 1995, 위의 책, 186~187쪽.

102) 이에 관해서는 신진혜, 2022, 「임진왜란기 경상도지역 사족의 상·제례 시행양상과 의미」 『국학연구』 47, 169~170쪽. 남귀여가혼으로 친정에 머물렀으므로 사망하면 친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임진전쟁 전후 시기의 남귀여가혼 사례에 관한 내용은 전경목, 1996, 「日記에 나타나는

식을 접하고 피난하는 시기에 딸의 상례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11월에 이르러 딸의 산소를 살폈다고 한다.

경상도 성주 지역에 살았던 都夢麒(1542~1594)의 차남인 도세순의 『龍蛇日記』를 통해서도 일부나마 피난기 기제나 상장례의 시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세순의 가족은 선조 25년 4월 13일 일본군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난을 논의하였고, 4월 29일에 서둘러 피난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였다.¹⁰³⁾

도몽기 일가는 피난하는 중이었음에도 선조 25년 5월 9일에 이르러 조부의 기일을 맞아 醴酒와 餅을 마련하여 奠을 올렸는데, 이때 인척인 도몽호와 그 가족들이 함께 기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선조 26년 6월 11일에 도세순의 모친이 사망하였는데, 선조 27년 6월에 이르러 모친의 소상을 준비하기 위해 형제들을 만나고,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資具를 마련하고 醴酒, 餅, 蔬食을 갖추었다. 6월 8일에 새벽 虛位를 진설하고 모친께 奠을 올렸는데, 허위를 진설했다는 내용으로 추측해보면 지방을 사용하거나 이조차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¹⁰⁴⁾

상복 착용에 대해서는 피난 중에도 상복을 챙겼던 장현광의 사례를 통해 모든 백성이 상례를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동지역의 장현광은 선조 24년(1591) 10월에 모친상을 치루고 12월에 장사를 지낸 상태였는데 모친상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전란을 맞게 되었다. 服喪 중이었던 장현광은 상복 차림으로 피난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일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고자 農笠을 쓰고 해를 가렸는데, 그런 장현광의 모습을 보고 노인 두 명이 陣笠을 쓴 일본군으로 오해하고 끌어앉아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장현광은 피난시 항상 喪服을 짊어지고 다니다가 大谷에서 머물던 집에 상복을 두었을 때 수색하던 일본군들이 이것을 열어보고는 상복의 燕尾를 찢고 상복을 찢 보자기와 함께 가지고 가버렸다. 장현광은 하늘이 노하여 적들의 횡포한 짓을 통해 자신을 훈계했다고 자책했다.¹⁰⁵⁾ 선조가 전란 피해를 입은 경성 백성들 가운데 상복 입은 사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는 정부에서 파악한대로 상례가 문란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피난 중에 상복을 입기가 어렵거나 이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다. 장현광은 전란 직전에 상을 당해 상복을 이미 마련한 상태였지만 전란 도중 상을 당하면 마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조 30년 정유재란기에는 함양지역으로 일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경운도 피난 길에 올라야 했다. 일본군이 가까워온다는 소식을 들은 정경운은 부모의 목주를 묘 옆에 묻었고, 8월 8일 開心寺로 피난했다. 당시 일본군이 구례와 남원 등을 경유하여, 8월 16일에 이르러 함양에 들어와 노략질했고, 이 과정에서 정경운의 딸은 절개를 지

朝鮮時代 士大夫의 일상생활-吳希文의 「瑣尾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9(4), 52~53쪽.

103) 당시 도세순의 가족은 다른 다섯 가족과 함께 움직였는데 각 가족구성원과 노비들까지 대략 100여 명이 함께 움직였을 것이라 추산하였다. 김성우, 2020,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219~220쪽.

104) 都世純, 『巖谷逸稿』 「雜著」 龍蛇日記.

105) 신진혜, 2020, 위의 논문, 484~485쪽.

키고자 일본군에게 대항하다가 사망하였다.¹⁰⁶⁾ 정경운은 지조를 지키다가 죽은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애통해하였다. 피난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상례를 치렀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9월 8일 奠物을 준비해 딸의 널 앞에서 곡을 했는데, 궁벽한 산에 뼈를 묻은 지 20일이 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¹⁰⁷⁾ 시신을 발견한 8월 21일경에 거의 곧바로 매안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리고 정경운과 함께 의병 활동을 했던 盧士尙은 정유재란이 발생했을 때 모친을 모시고 피난하던 중 모친상을 당하자 예에 따라 상을 치르다가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정경운은 난리 중에도 예를 따라 애통해하다가 사망했다고 평가하며 슬퍼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전란 시기에도 그 이전까지 축적된 예를 체현하려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⁸⁾

2. 전란 이후 비상시 의례에 관한 인식

1) 神主에 대한 인식

조선 정부에서는 건국 직후부터 사족 가문의 가례 시행을 권장했고, 사당 중심의 의례 시행 양상은 점차 정착되었다. 사족의 사당에는 3대 혹은 4대조의 신주를 모셨는데, 신주는 가문의 정체성을 상징한다.¹⁰⁹⁾ 전란의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피난길에 오른 사족들은 신주를 땅에 묻거나 혹은 직접 모시고 떠나는 양상을 보였다. 광해군 재위기에 조선의 효자·충신·열녀의 사례를 채집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정리하여 간행했는데, 여기에 임진전쟁기의 사례가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¹¹⁰⁾ 열녀의 사례 가운데 임진전쟁이 발생했음에도 피하지 않고 대구부사인 남편 윤현尹暉을 따라가려 했던 부인 김씨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윤현은 “나는 나라를 지키는 신하가 되었으니 당당히 있다가 귀신이 되려는데, 조상 신주를 도적에게 더럽힘이 옳지 않으니, 그대가

106) 『孤臺日錄』 卷2, 정유 8월 11일 ; 8월 13일 ; 8월 16일 ; 8월 21일.

107) 『孤臺日錄』 卷2, 정유 9월 8일.

108) 노사상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정해은, 위의 논문, 97쪽.

109) 증조 이하를 제사하는 것이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제도였지만 『주자가례』에 따라 고조까지 제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金長生, 『沙溪全書』 卷42, 「疑禮問解拾遺」 通禮, 祠堂. 이황은 『주자가례』에 4대를 제사하도록 되어 있어도 『국조오례의』는 증조 이하만 제사하게 되어 있으니 시왕의 제도를 준용해야하고 고조까지 제사하게 되면 고조의 신주가 들어갈 감실을 마련해야한다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17세기에 이르면 程朱의 설을 따라 四대를 제사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었는데, 이것이 조선의 국법에는 어긋나지만 『주자가례』에 따라 고조까지 제사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이라 바꾸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동우, 2011, 「朝鮮時代 家禮 研究를 위한 새로운 視覺과 方法」, 『한국사상사학』 39, 161~165쪽.

110) 『光海君日記』 [중초본] 卷113, 光海 9年 3月 11日 丙子. 李崇寧, 1961, 「壬辰倭亂과 民間人 被害에 對하여 : 『東國新續 三綱行實』의 被害報告書의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歷史學報』 17·18 ; 정일영, 2010, 「임진왜란 이후 '教化'의 양상 : 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4 ; 정호훈, 2018, 「전쟁의 기억과 정치론,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한국사상사학』 58.

품고 강을 건너라” 하였고, 신주를 지키라는 남편의 부탁을 받은 부인 김씨는 도적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강에 빠져 사망했고, 선조 때 그녀를 위한 정문이 세워졌다.¹¹¹⁾ 이처럼 사족 가문에서는 급박한 상황 중에도 신주를 옥보이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장현광의 경우에는 피난 전에 사당 옆에 선대조와 부인의 목주 11위를 매안했는데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는 신주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장현광은 일본군 손에 신주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분하게 여겼다. 피난길에 일본군들이 서원이나 향교 등에 모셔진 位版이나 목주를 칼로 쪼개거나 더럽힌다는 소문을 들은 상황에서 조상의 신주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욱 분하게 여겼다. 하지만 아직 전란이 끝나지 않아 신주를 재조할 여유가 없었던 장현광은 신주를 복구하기 전까지 종이를 잘라서 신주 대신 모시는 방법을 썼다.¹¹²⁾

다른 사족들 역시 피난할 때 신주를 매안할지, 모시고 갈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金長生(1548~1631)은 피난하는 경우 신주를 모시고 가야한다고 여겼다. 宋浚吉(1606~1672)은 난리를 만난 경우 신주를 땅에 묻고 떠나는 것과 피난 가는 길에 모시고 가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은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장생은 신주를 모시고 가는 것이 옳다고 답하였다. 타지로 부임하는 사람도 신주를 받들고 가는데 신도가 고요한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난을 갈 때 받들고 가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리석다고 비판하였다.¹¹³⁾

이론적으로는 신주를 고요히 묻어두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으나 전란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에 신주를 묻어두면 훼손될 수도 있으니 모시고 가야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김장생은 임진왜란 때 定山으로 가게 되어 신주는 옹기에 담아서 묘소에 묻어두고 떠났는데, 반년 뒤에 파내어보니 습기 때문에 積足이 떨어져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장생은 정유재란 때 海西지역으로 피난하면서 신주 보관함을 제거하고 신주만 상자에 넣어서 말등에 실어 봉안하고 받들었던 경험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묘호란 때 소현세자를 따라 전주로 내려갈 때에는 금산으로 갔다가 영남으로 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꺾을 만들어 사당 안에 묻어두고 떠났다가 한 달 이내에 돌아와 꺼내서 봉안하였던 경험도 언급했지만, 만약 다시 변란이 있게 된다면 받들고 갈 것이라고 하였다.¹¹⁴⁾

반면에 宋時烈(1607~1689)은 신주를 매안하는 것이 낫다고 여겼다.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송시열의 諸父[三寸叔父]와 判書公의 자손이 서로 의논하여 신주를 매안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신주를 받들고 난을 피하는 것이 情理에는 합당하지만 신주를 받들고 가는 도중 도적들에게 잡혀 죽게되어 신주가 도로에 버려지게 될

111) 『東國新續三綱行實』 「烈女圖」 卷2, 二婦投江.

112) 신진혜, 2020, 위의 논문, 488~490쪽.

113) 金長生, 『沙溪全書』 卷42, 「疑禮問解拾遺」, 通禮 ; 宋浚吉, 『同春堂集』 別集 卷2, 「書」, 上沙溪先生.

114) 金長生, 『沙溪遺稿』 卷3, 「書」, 答金獻問目 ; 金長生, 『沙溪全書』 卷42, 「疑禮問解拾遺」, 通禮, 「亂時廟主奉往或權埋」.

수도 있으니 그럴 바에는 사당 뒤에 매안하였다가 돌아오면 다시 봉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¹⁵⁾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송시열은 부득이하게 신주를 매안하게 되면 배곡하면서 예를 갖추도록 하였다.

전란 이후의 시기를 살았던 李灝(1681~1763)은 신주를 땅에 묻고 가되 신령이 의지할 수 있는 매개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익은 사람이 병화를 당했을 때 산 사람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는데 신주까지 짊어지고 떠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 땅에 묻어두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봉안하는 것도 나쁠 것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혼령이 신주가 아닌 다른 곳에 의지하도록 고하고 이를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¹¹⁶⁾ 앞서 장현광과 김장생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거했다면 이익과 송시열은 후대인으로써 사례에 근거해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크게 신주를 직접 싣고 가야한다는 의견과 땅에 묻어두고 가도 된다는 의견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짐작된다.¹¹⁷⁾

왕실의 경우에도 신주를 땅에 묻는 것을 그리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임진전쟁 발발 직후에 종묘의 신주를 모시고 가던 중 위기가 닥쳐 신주를 땅에 매안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종친과 대신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가 신주를 되찾아왔다.¹¹⁸⁾ 임진전쟁과 정유재란시에는 신주를 직접 모시고 이동했기에 모든 신주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마다 신주를 모시고 파천하였다.

인조 재위기에는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세 번의 종묘 신주 파천이 있었다. 여러 차례 변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는 파천시 신주를 모실 공간인 보장처를 따로 조성하기도 하였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발생했을 때 대가의 파천과 더불어 影幀과 종묘 신주의 봉행이 논의되었다. 뜻밖의 변고에 다급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이 거론되었다. 봉안하는 興床을 마련할 틈이 없었기에 인조는 “임진년 西幸 때의 전례에 따라 종묘 신주는 말 위에 받들어 싣고, 影幀은 위아래의 軸을 제거하여 봉행하기 편하게 하라”고 하교하였다. 종묘·사직의 신주와 위판은 공주로 향하는 파천길에 대가와 함께하게 되었다.¹¹⁹⁾

그리고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으로 인해 다시금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江都로 파천을 떠나게 되었을 때 종묘와 사직 신주에 대해 告祭를 지내고 우의정에게 왕비와 더불어 모셔가도록 하였는데¹²⁰⁾ 대가보다 먼저 강도에 도착하였다.¹²¹⁾ 정묘호란이 발

115) 宋時烈, 『宋子大全』 卷94, 「書」, 答李同甫 丙辰九月三日 ; 卷215, 「傳」, 恩津宋氏家傳.

116) 李灝, 『星湖僿說』 卷11, 「人事門」, 成先生木主.

117) 신진혜, 2020, 위의 논문, 491~495쪽.

118) 신진혜, 2018, 위의 논문, 382~385쪽.

119) 『仁祖實錄』 卷4, 仁祖 2年 2月 11日 乙未 ; 2月 12日 丙申 ; 2月 13日 丁酉.

120) 『仁祖實錄』 卷15, 仁祖 5年 1月 18日 丙戌.

121) 예조에서는 大駕가 서울을 떠나던 날 경향이 없어 廟社가 먼저 江都에 도착했지만 도성으로 돌아갈 때에는 상께서 직접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다. 『仁祖實錄』 卷15, 仁祖 5年 3月 29日 丙申.

생하고 약 2개월 만에 회맹과 화친을 도모함으로써 상황은 종료되었지만,¹²²⁾ 두 번의 신주 파천을 경험한 후 조정에서는 이후의 파천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인조 5년 8월, 강화유수 심열의 치계에 따르면, 甲串에 창고를 짓고 火藥庫를 邑城 서편에, 訓練廳을 남문 밖에, 朝房을 客舍 대문 밖에 지어 파천에 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변사의 계사에 따라 이듬해에 묘사를 임시로 봉안할 곳은 조성하라는 분부를 받들어 터를 닦고 주추를 정해서 추위가 오기 전에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 보고하였다.¹²³⁾ 이는 비변사에서 종묘·사직의 임시봉안처 조성에 쓰일 재목과 기와를 구하기 위해 당시 長生殿으로 조성되어있던 경복궁 동문 밖 옛날 종묘의 間架를 다시 헐어서 강화의 임시봉안처 조성에 사용할 것을 아뢴 기록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¹²⁴⁾ 이때 지어진 봉안처는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봉안처로 쓰였는데, ‘行宮新廟’라 지칭되었다.

인조대의 세 번째 신주 파천은 병자호란 때에 있었다. 인조 14년(1636) 12월, 도원수 金自點(1588~1651)의 치계에 淸軍이 安州까지 이르렀다고 하자, 金瑬(1571~1648)는 畿輔의 군사를 소집하여 어가를 호위하게 하여 江都로 파천할 것을 청하였다.¹²⁵⁾ 파천이 결정되자 예방승지 韓興一(1587~1651)에게 명하여 종묘 신주·사직 위판과 빈궁을 모시고 먼저 강도로 향하게 했는데,¹²⁶⁾ 인조 15년(1637)에 있었던 윤방의 상소에 따르면 강도로 모셔온 신주와 위판은 인조 14년(1636) 12월 17일에 행궁의 新廟에 봉안되었다.¹²⁷⁾ 행궁의 신묘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묘호란 이후에 미리 준비해 둔 곳이었다. 선조대에 임진전쟁·정유재란기에 두 차례의 신주 파천이 있었던 데 이어, 인조대에도 이괄의 난·정묘호란·병자호란기에 세 차례의 신주 파천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위험에 대비하게 하였던 것이다.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숙종 37년(1711)에 이르러서는 남한산성 안에 종묘의 신주와 사직의 위판을 모실 묘사 봉안처를 조성하라는 명이 있었다. 숙종 36년(1710) 9월 청으로부터 도망친 해적을 조심하라는 소식을 접한 조선에서는 큰 동요가 있었고, 숙종은 만약을 대비해 대피처를 마련하고자 했다. 당시 숙종은 남한산성에 묘사봉안처를 영건하도록 하교했다.¹²⁸⁾ 이는 江都 長寧殿의 間架 제도를 본떠서 營建하되, 7간인 장녕전보다 1간을 더 조성하여 板壁으로 사이를 막아서 서쪽은 영녕전을, 동쪽은 종묘를 권안하도록 하였다.¹²⁹⁾

122) 『仁祖實錄』 卷15, 仁祖 5年 3月 3日 庚午.

123) 『仁祖實錄』 卷17, 仁祖 5年 8月 18日 辛亥.

124) 다만, 당시 인조는 장생전을 헐어서 얻은 間架로 임시 봉안처를 짓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宗廟儀軌』 4冊(奎14220), 「故事」, 仁祖 丁卯年(1627, 仁祖 5) 6月 23日 戊午.

125)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13日 癸未.

126) 『仁祖實錄』 卷33, 仁祖 14年 12月 14日 甲申.

127) 『仁祖實錄』 卷34, 仁祖 15年 閏4月 13日 辛亥.

128)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우진, 2022, 『숙종의 대청인식과 수도권 방어정책』, 민속원, 188~199쪽.

129) 『肅宗實錄』 卷50, 肅宗 37年 1月 20日 己酉 ; 『備邊司謄錄』 肅宗 37年 3月 4日.

2) 의례서에 수록된 비상시에 대한 대처

전란 이후 의례 관련 臚錄과 典籍이 산실되어 의례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왕실에서 의례 정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광해군 즉위년에 왕실에서 예를 주관함에 있어서 사족 개인에게 조언을 구해야 했는데, 교리 崔起南은 선조의 상을 위해 예를 잘 아는 鄭述(1543~1620)·韓百謙(1552~1615)·金長生(1548~1631)을 불러 상의할 것을 제안하였다.¹³⁰⁾ 왕실과 정부뿐만 아니라 사족 가문에서도 의례에 관한 관심이 무척 높아진 상태였다.¹³¹⁾

16세기 후반부터는 체제를 갖춘 가례서가 등장하는데, 상제례 시행의 매뉴얼을 마련하려는 작업과 더불어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문답 혹은 고증의 형식을 갖춘 저술도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미 전란 이전에 『주자가례』와 『의례경전통해』의 보급과 확산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을 배경으로 보기도 하고,¹³²⁾ 임진전쟁 이후 禮書가 다수 산실된 상황과 유교적 지배질서와 체제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인해 다수의 예서가 전란 이후 저술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³³⁾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배경보다는 전란 이후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던 여러 조선의 의례서에 전쟁 경험이 어떻게 녹아들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란을 포함한 여러 변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의례를 어떻게 변통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周禮』나 『儀禮』, 『禮記』에도 단편적으로나마 사례가 제시되어 있고, 『春秋』에서는 여러 변통된 의례의 시행 사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후대에도 참고되었다. 조선에서는 전란은 물론 기근이나 전염병, 도변으로 인해 의례에 변통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여러 경험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후대에 정리된 사족의 예서는 물론 국가에서 간행한 의례서에도 일부 기재되었다. 조선시대의 실제 사례를 그대로 정리하여 수록하거나 혹은 해당 상황과 관련된 여러 경전이나 역사서의 전거를 모아 의례서에 기재함으로써 여러 변고의 상황에서 어떻게 상제례를 시행할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는 임진전쟁과 같은 큰 전란이나 여러 크고 작은 변수에 대한 경험 축적은 물론 예학에 관한 연구와 이해의 성숙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선조 25년~27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현광은 피난 중에 간략하게 제례를 수행하는 방법을 「奔竄中事亡儀略」으로 정리하였다. 장현광은 피난 중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정성이니, 질박한 물건으로 제사하더라도 정결하게 정성을 다할 것

130) 『光海君日記』[中草本] 卷3, 光海 卽位年 4月 10日 丙寅 ; 卷11, 光海 卽位年 12月 20日 癸酉. 이에 관한 내용은 신진혜, 2019, 『조선후기 종묘의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9쪽.

131) 선행연구에서는 무너진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鄉禮와 家禮에 주목했던 당대의 상황이 원인이란 보았다. 고영진, 1995, 위의 책, 271~351쪽.

132) 장동우, 2011, 위의 논문, 152쪽.

133) 고영진, 1995, 위의 책, 214쪽.

을 강조하였다.¹³⁴⁾ 특히 기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식절차를 제시하였고, 속절제와 천신에 대해서도 처해있는 상황에 맞추어 구할 수 있는 것을 올려서 간략히 행할 것을 제안했다. 墓祭에 대해서는 피난 중이라도 왕래할 수 있는 지역에 있다면 묘제를 해야한다고 보았고 장현광 자신도 난을 피해 숨어있는 동안에 가급적 묘제를 충실히 했다는 경험을 소개하였다.¹³⁵⁾ 비록 제물을 성대히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대략 魚脯·肉脯, 고기와 과일 등을 갖출 것을 제안했고 임시적으로 찹쌀과 누룩가루를 그릇에 넣어 간편하게 술을 빚는 방법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일상에 쓰던 물건을 제사에 쓰는 것보다는 깨끗한 대용품은 쓸 것을 권장했고, 제물을 줄이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지만 피난 중에는 절차와 제수를 줄이고 대용품을 쓰더라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¹³⁶⁾

사족 가문의 의례서는 17세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거듭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이후로는 행례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疑禮, 『주자가례』에 규정이 없어 義理에 따라 예제를 구성해야하는 變禮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내용이 예서에 독자적으로 수록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의례와 변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정리하였고 고증내용을 채집하여 예서의 본문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時俗을 반영하여 예를 구성하려는 변례에 대한 관심은 학파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난다.¹³⁷⁾

金長生의 여러 예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疑禮問解拾遺』에서는 앞서 정리한 피난기의 신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몇몇 비밀상적 상황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전염병이나 전란을 만난 경우, 혹은 상례를 제대로 치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 어떻게 임시적 방법을 택할지에 관한 내용을 선별하면 하단의 표와 같다.¹³⁸⁾

<표 1> 金長生의 『疑禮問解拾遺』에 수록된 변통적 상제례 관련 내용

구분	주제	세부내용
통례(通禮)	사당(祠堂)	○사당에 불이 나 새로 신주(神主)를 만들 적에는 예전의 신주는 땅에 파묻는다. ○난리가 났을 때에는 묘주(廟主)를 받들고 가거나 혹은 임시로 파묻는다.
상례(喪禮)	조석곡전(朝夕哭奠)	○피우(避寓)하는 중에는 상식을 올린다.
	상식(上食)	
	분상(奔喪)	○분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성복(成服)한다. ○난리를 만나 임시로 매장하였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신주(神主)를 세우고 우제(虞祭)를 지낸다.

134)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卷7, 「雜著」, 奔竄中事亡儀略.

135) 인동에 있는 고비의 묘에는 선조 26년 6월, 성주에 있는 묘에는 선조 27년 3월에 찾아갔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龍蛇日記』 卷1, 「避難錄」.

136)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卷7, 「雜著」, 奔竄中事亡儀略.

137) 장동우, 2011, 위의 논문, 152~153쪽.

138) 金長生, 『沙溪全書』 卷42, 「疑禮問解拾遺」

『의례문해습유』 「통례」에서 화변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해보면 주로 사당의 신주와 관련된 변고에 대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당에 화변이 있어 신주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이전 신주는 묘소에 묻고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과 더불어, 앞서 정리했던 신주를 피난할 때 모시고 가는지 매안하고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김장생은 정유재란때 받들고 간 경험과 정묘호란때 매안하고 간 경험이 모두 있으나 만약 또다시 변란을 만나면 모시고 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례」에 관해서는 전염병, 변란 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삼년상을 지내는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 避靄할 경우 조석 상식을 올리는 일에 관해 김장생은 신주를 피우하는 외방으로 모시고 가서 靄연을 설치하고 朝夕으로 上食을 올리도록 답변하였다. 그리고 부득이 외국에 나가있거나 변란을 만나서 奔喪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있는 곳에서 성복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장례에 대해서도 난리를 만나 임시로 매장하였을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신주를 세우고 虞祭를 지내야 한다고 보았다. 질문 내용에서 ‘어떤 선비가 상을 당하여 미처 장사를 치르기도 전에 오랑개의 변란을 만나 임시로 매장하였는데, 사세가 급박해서 祖奠이나 遣奠 등의 예를 모두 행하지 못하였다. 그 뒤에 오랑개들이 조금 물러가고 나서 비로소 장사를 지낼 계획을 하였는데, 조전이나 견전 등의 예는 모두 이미 할 때가 지나갔다’는 상황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장생은 ‘오랫동안 개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먼저 신주를 쓰고서 우제를 행하면 될 것’이라 답변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예서에 수록된 것을 통해 전란이나 전염병, 화변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이 축적되었고 각자의 예학적 이해를 적용해 임시방편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柳長源의 『常變通攷』는 통례·관례·혼례·상례·제례·향례·학교례·국휼례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통례·혼례·상례·학교례에 관해 변고가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항목화되어 수록되어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례를 채집한 내용도 있지만, 경전이나 중국 역대의 사례를 예로 들어 정리한 부분도 있다. 사례를 넓게 수집하여 유사한 상황에 맞추어 참조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상변통고』의 내용 가운데 변통적 의례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해서 도표화하면 하단과 같다.

<표 2> 柳長源의 『常變通攷』에 수록된 변통적 의례 관련 내용

권	구분	주제	세부내용
2권	通禮	사당의 화변 〔祠堂禍變〕	○수해·화재·도적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함(有水火盜賊先救祠堂) ○사당 화재의 고사(祠堂火告辭) ○사당 화재에 변고에 대처하는 절차(祠堂火處變之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사당에 불이 나서 제주하는 의문〔父未葬祠堂火題主之疑〕 ○대상 뒤에 사당에 불이 났을 때의 변고에 대처하는 절차(大祥後祠

			堂火處變之節) ○가묘가 무너졌을 때의 고유(家廟頽圮告由) ○난을 피해 신주를 묻는 절차(避亂埋主之節)
6권	昏禮	혼례의 변통하는 절차(昏變節)	○혼례를 올리려 하는데 상을 당함(將昏遇喪) ○여자가 아직 묘현하지 못했는데 죽음(女未廟見而死) ○상을 듣고 달려가지 못했더라도 복을 벗으면 혼례를 치름(聞喪未奔服除而婚) ○부모와 헤어져 사망했는지를 모른다고 종신토록 혼인하지 않아서는 안 됨(父母乖離不知死亡不可終身不婚)
9권	喪禮	성복(成服)	○전염병으로 성복하지 않고 피하러 나가는 잘못(癘疫不成服出避之非) ○성복 후에 피하러 나가는 여부(成服後出避與否) ○객사한 자의 처자의 성복에 관한 절차(客死者妻子成服之節)
12권		복제의변(服制疑變)	○군주나 아버지를 잃고 죽음을 몰랐을 때의 복(失君父不知死亡服) ○부모가 사망하였는데 시신과 널을 잃었을 때의 복(父母死亡失屍柩服)
22권		거상잡의(居喪雜儀)	○상중에 왕사에 복무함(喪中服王事) ○복중에 벼슬을 내놓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음(服中不解官不赴舉)
27권	學校禮	학교례(學校禮)	○묘우에 변고가 났을 때의 절차(廟宇遭變節次)

『상변통고』는 폭넓은 사례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전란 뿐만 아니라 화변, 도적, 그 외의 비상시에 대한 대처 방식도 좀 더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난을 피하는 避亂, 전염병을 피하는 出避 혹은 避厲, 변고를 만났을 때의 遭變, 변고를 만났을 때도 예를 잘 변통하는 處變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것을 통해 다양한 변수에 대한 정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례」의 사당에 관한 내용에서 관직에 있으면서 사당을 받드는[居官奉廟] 경우에 부임지로 신주를 모시고 가는지 여부에 대해 남전 여씨, 주희 등의 여러 의견을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례문해』에 수록된 내용 또한 함께 인용하였다. “요즘 사람 중에 支子로서 고을 수령이 되면 신주를 받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이것은 예의 正道가 아니다. 임진년 난리가 일어난 뒤에 생긴 임시 방도이다”는 답변을 함께 수록했는데 신주를 모시고 떠나는 임시방편이 임진전쟁 때부터 여러 곳에 적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해·화재·도적의 화변이 있으면 사당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는데, “신주와 유서를 옮기고, 그다음에 제기를, 그다음에 집 안의 재물을 옮긴다”고 명기함으로써 국가에서 종묘를 수호하듯 가문에서는 사당을 수호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혼례」에 관해서는 『통전』을 인용하여 부모의 생사를 알지 못할때 혼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이에 대해 권도의 예를 세워 성년이 지난 여자는 시집가도록 허락하며, 그 남자는 마땅히 부모를 찾아야 하나 이치와 도리를 다하고 나서 장가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蔡謨의 논의를 수록하였다.

「상례」에 관해서는 국가에 변고가 생겼을 경우 개인적으로 상을 치르고 있음에도

王事に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기』 「상대기」의 ‘군주를 이미 장사 지내고 王政이 나라에 들어오면, 졸곡 뒤에 왕사에 복무한다. 대부와 사의 장사를 이미 치르고 公政이 집에 들어오면, 졸곡 뒤에는 弁·經·帶를 착용하고 兵事라도 피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증자문」·「왕제」, 『춘추좌전』·『춘추공양전』을 두루 인용하였다. 특히 『공양전』 주의 ‘練祭를 지낸 뒤에는 弁冕을 쓰고 전쟁의 일에 복무할 수 있는데, 군주가 그를 부림은 잘못이나, 신하가 그것을 행함은 예’라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일에 복무하여 군주를 섬김과 벼슬을 그만두어 아버지를 친애하는 은혜에 대한 여러 사례를 두루 인용하여 상황에 따라 여러 변통이 필요함을 드러냈다.¹³⁹⁾

「학교례」에 관해서는 禮林書院의 士林이 “화재를 당한 뒤에 즉시 本院의 東齋에 虛位를 설치했는데, 과연 변고에 대처하는 합당한 방법인가?”에 대해 질문했는데, 갈암 이현일은 “서둘러 廟宇를 지어 조속히 신주를 봉안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듯하며, 굳이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시했고, “새 묘우가 낙성된 뒤에 位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이는 ‘새 사당에서 써야 마땅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허위를 설치한 곳에서 써야 마땅하다’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 사당에서 위판을 써도 아마 불가할 게 없을 것이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인용된 예림서원의 예시는 정확한 연대를 비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전란기에 있었던 일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서원의 화재와 훼손은 임진전쟁 당시에도 흔히 일어났던 일이고, 전란기가 아니어도 예기치 못한 변고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여러 학자를 봉안한 서원에 변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예서에 수록하여 만약의 상황에 참고하도록 예비했던 것이다.

사족 의례서 뿐만 아니라 국가 의례에 관해서도 여러 변칙적 사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숙종 23년(1697)에 편찬된 『종묘의궤』는 종묘와 영녕전에 관한 예제를 수록하면서 「變禮」와 「盜變」 항목을 따로 정리하여 종묘에 있었던 선대의 경험을 정리하였다.

「변례」의 경우, 선조 25년 임진전쟁 발생 당시에 문소전의 위판을 땅에 매안하고 떠났는데 이후 서리 조현범이 소혜왕후의 위판을 수습해서 바쳤다는 내용이나, 종묘가 불탄 이후 심의겸의 집을 임시 종묘인 가묘로 삼았던 사례, 종묘를 재건하기 위해 종묘수조도감을 세워서 업무를 주관했던 사례를 비롯해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당시 신주를 모시고 파천했으나 훼손되었기에 이를 수리하기 위해 종묘수리도감을 세워

139) 柳長源, 『常變通攷』 卷22. ○喪禮, 居喪雜儀. 상중에 왕사에 복무함[喪中服王事] ○《公羊傳》: 옛 날에는 신하가 大喪을 당하면 군주는 3년 동안 문하에 부르지 않았다. 주: 거둬 효자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練祭를 지낸 뒤에는 弁冕을 쓰고 전쟁의 일에 복무할 수 있는데, 군주가 그를 부림은 잘못이나, 신하가 그것을 행함은 예이다. 闕子是 요질을 하고 일에 복무하였는데, 주: 연제를 지낸 뒤에는 남자는 首經을 벗는다. 이윽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함이 옛날의 도리이지만 인심에 맞지[卽] 않다”고 하고, 주: 卽은 가까움이다. 물러나 벼슬을 그만두자, 공자는 좋다고 여겼다. 주: 일에 복무하여 밖으로 군주를 섬기는 의리를 얻었고, 벼슬을 그만두어 안으로 아버지를 친애하는 은혜를 잃지 않음을 좋게 여김이다.

주관했던 내용을 승정원일기나 여러 등록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주로 전란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¹⁴⁰⁾

「도변」의 경우 선조 23년(1590) 종묘의 금보와 은보를 수복이 훔쳐가면서 불을 질렀던 사례나 인조 5년(1627) 예조 서리가 종묘의 제기를 훔쳤던 사례와 같이 종묘와 관련한 도변 사례를 열거한 내용이다. 이렇듯 일반적이지 못한 여러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참고해서 일을 처리하기에 용이하도록 내용을 채집했던 것이다.¹⁴¹⁾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임진전쟁 이후 신설되거나 폐지된 의례를 정리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영조 재위기에 『속오례의』가 편찬되었다.

전란이 종식되기 전부터 정부에서는 충신·효자·열녀의 사례를 수집하였고 광해군 9년(1617)에 이르러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는 임진전쟁과 정유재란과 관련된 충신·효자·열녀의 사례가 다수 수록되었는데, 간행의도에 대해서는 전란 이후의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선정한 것이라 보기도 하고,¹⁴²⁾ 전쟁을 삼강의 도덕 가치로써 기억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정치 행위의 결과물이라 보기도 한다.¹⁴³⁾

정리하자면, 긴 시간 전란을 겪고 또한 여러 비일상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이후 국가에서는 예제를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족들은 각 지역 및 학파에 따라 예학 연구에 집중하여 이해에 진전을 이루었다.¹⁴⁴⁾ 그리고 일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예를 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선례를 쌓아갔고 이를 예서에 수록하기에 이르게 된다.

결론

임진전쟁기 왕실과 사족의 피난 과정에서 경험했던 상·제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거시적으로 정리하면서 임진전쟁의 경험이 조선의 예제 발전 과정에 있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검토해보았다.

조선은 건국 이후부터 의례를 구축하고 시행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조선 특유의 의례 제도가 왕실과 사족 가문에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임진전쟁이라는 격변을 마주하면서 왕실은 피난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일본군의 진격로에 거주했던 백성들 역시 큰 위기를 겪었다. 파천하는 과정에서 왕실에서는 머무르는 지역마다 종묘 신주도 임시로 봉안했으며, 常時에 시행하던 의례를 어떻게 권도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140) 『宗廟儀軌』 卷4, 「變禮」

141) 『宗廟儀軌』 卷4, 「盜變」

142) 정일영, 2010, 위의 논문.

143) 정호훈, 2018, 위의 논문.

144) 장동우, 2008, 「조선후기 가례 담론의 등장 배경과 지역적 특색-『주자가례』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3 ; 남재주, 2019, 『조선후기 영남 예학 연구』, 도서출판 3.

서도 고민하였다. 그리고 일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부 피난 백성들 역시 사례나 제례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난중인 사족과 왕실은 제사를 위한 물품을 뜻대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동일한 위기 안에서 모두 간략하게라도 정성을 표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런데 왕실과 사족이 피난 중에 예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동일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선조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선조가 환도하면서 전란 중임에도 백성 중에 상복입은 자가 드물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가 문란해졌다는 우려를 표했던 사례나, 실제로 상중에 과거에 응시하거나 마음대로 기복하고 육식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을 확인한 정부에서는 국가 윤리기강의 문란을 우려하였다. 하지만 경상도 지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실제 백성들로서는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예를 다하려 노력했던 모습도 병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란기를 거치면서 단순히 국가의 예제가 전체적으로 문란해졌다고 일반화할 수 없으며, 지역별로 혹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란의 경험은 이후 의례적 변통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행동방침을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임진전쟁과 정유재란시에는 신주를 직접 모시고 이동했기에 모든 신주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나라에 변고가 있을 때 마다 신주를 모시고 파천하였다. 인조 재위기에는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세 번의 종묘 신주 파천이 있었다. 여러 차례 변란을 겪으면서 정부에서는 파천시 신주를 모실 공간인 보장처를 따로 조성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왕실이나 사족들은 전란은 물론 기근이나 전염병, 도변으로 인해 의례의 변통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여러 경험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후대에 정리된 사족의 예서는 물론 국가에서 간행한 의례서에도 일부 기재되었다. 조선 시대의 실제 사례를 그대로 정리하여 수록하거나 혹은 해당 상황과 관련된 여러 경전이나 역사서의 전거를 모아 의례서에 기재함으로써 여러 변고의 상황에서 어떻게 상제례를 시행할지에 대한 참고자료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는 임진전쟁과 같은 큰 전란 경험이나 여러 크고 작은 변수에 대한 경험 축적, 그리고 예학에 관한 연구와 이해의 성숙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저서

- 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김우진, 2022, 『숙종의 대청인식과 수도권 방어정책』, 민속원
남재주, 2019, 『조선후기 영남 예학 연구』, 도서출판 3

연구논문

- 김경숙, 2000,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실행과 그 성격-李文樾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98
김경태, 2007,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한국사연구』 138
김경태, 2024, 「2000년대 이후 임진왜란 연구의 새로운 경향과 과제」, 『조선시대사학보』 108
김성우, 2020,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신진혜, 2018,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240
신진혜, 2019, 『조선후기 종묘의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진혜, 2020, 「임진왜란기 張顯光(1554~1637)의 피난 중 喪·祭禮 시행양상」, 『韓國實學研究』 40
신진혜, 2022, 「임진왜란기 경상도지역 사족의 상·제례 시행양상과 의미」, 『국학연구』 47
신진혜, 2024, 「『운천호종일기雲川扈從日記』에 수록된 임진전쟁기 선조의 외교 의례 시행과 의미」, 『국학연구』 53
이선희, 2010, 「임진왜란 시기 咸陽 守令의 전란대처-『孤臺日錄』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10
이성임, 2019,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9
李崇寧, 1961, 「壬辰倭亂과 民間人 被害에 對하여: 「東國新續 三綱行實」의 被害報告書의 資料를 中心으로 하여」, 『歷史學報』 17·18
장동우, 2008, 「조선후기 가례 담론의 등장 배경과 지역적 특색-『주자가례』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13
장동우, 2011, 「朝鮮時代 家禮 研究를 위한 새로운 視覺과 方法」, 『한국사상사학』 39
장동우, 2013, 「『國朝五禮儀』에 규정된 大夫·士·庶人의 四禮에 관한 고찰」, 『한국학연구』 31
전경목, 1996, 「日記에 나타나는 朝鮮時代 士大夫의 일상생활-吳希文의 『瑣尾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9(4)
정은주, 2022, 「임진전쟁기 明 將官에 대한 接待都監 운영 양상」, 『명청사연구』 57
정일영, 2010, 「임진왜란 이후 '教化'의 양상: 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4
정해은, 2007, 「임진왜란 시기 경상도 사족의 전쟁 체험」, 『역사와 현실』 64
정호훈, 2018, 「전쟁의 기억과 정치론」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한국사상사학』 58
최은주, 2020, 「조선시대 임진왜란 일기자료의 현황과 傳存 양상」, 『한국민족문화』 77

「임진전쟁과 피난, 그리고 의례 : 왕실과 사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

김성희
국사편찬위원회

본 연구는 조선 왕실과 사족이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시행한 의례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경험이 당대인의 의례 이해에 남긴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시도로 판단합니다. 조선 후기 예학 발달을 추동한 한 요인으로서 전쟁 경험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입론을 수정·보완하려 한 발표자의 노력과 성과에 공감하며, 연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혹 토론자의 관견으로 인한 오독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사료를 통해 드러나는 의례에 대한 당대인의 심성

- 발표자께서는 관찬 연대기와 개인 일기 등 다양한 사료를 섭렵하여 전쟁 시 의례 시행 사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기록의 정량적 한계와 개별 기록의 정성적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연구자 개인의 한정된 시간과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누구든 쉬이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다만, ‘예외적’일 수 있는 사례를 읽는 관점의 조정을 통해 이와 같은 물리적 한계를 다소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발표자께서 발굴하신 장현광, 이문건 등의 의례 시행 기록은,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일견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의례 시행을 고수하는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치제를 돕는 가족과 주변인들은 전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피난 중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래저래 제수를 마련하고, 때로는 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장현광, 이문건 등의 의례 설행 취지에 공감하고 공·사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당대인들의 눈에는 결코 지나친 행위로 보이지 않았다고 할 만한 정황입니다.

-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의례를 이해하는 당대인들의 공통된 심성,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 ‘의례는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례 관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奔竄中事亡儀略」에 담긴 당사자의 발화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며, 왕실의 의례 실행 사례를 통해서도 공히 확인 가능합니다.
- 토론자는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조선인, 적어도 왕실과 사족 등 식자층이 의례를 향해 취했던 입장(심성)을 확인하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발표자께서 “왕실과 사족이 피난 중에 예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동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사료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읽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중의 백성들이 상복을 입지 않는다는 선조의 우려를 적시하고, 이와 상반된 경향도 사족의 의례 시행 사례를 발굴·제시함으로써 이 시기 예학 경향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수정·보완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필자께서 주목하신 두 가지 사례 역시 의례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를 지켜야 한다는 꼭 닮은 심성이 상이한 방향으로 드러나는 사례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용어 사용 일관성 제고

- 발표자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임진왜란’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는 데에는 합당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만, 본문 중에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기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 사용에 대한 발표자의 일관된 의도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용어 사용의 일관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禮林書院 재건 시기 관련 기록

- 발표자께서 柳長源의 『常變通攷』 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學校禮」와 관련하여 禮林書院 재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1744년에 간행된 조임도(趙任道, 1585~1664)의 시문집 『澗松集』 권5에 수록된 「祝文禮林書院移建時告文」은 1634년 禮林書院을 옮겨 지을 적에 고유한 글인데, 내

용 중 ‘창건 이래 병화도 미치지 않아 옛 모습과 같다’고 기술한 부분이 보입니다.¹⁴⁵⁾ 1567년 서원을 창건한 후에 주요 건물을 재건할 만한 피해는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입니다.

- 이어 현종 5년 9월 『승정원일기』 기사 가운데 숙종 경신년(1680)에 密陽 禮林書院에 화재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¹⁴⁶⁾

-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예림서원의 대대적 화재와 훼손은 전란 이후의 사건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4. 논문의 취지와 다소 이질적인 문단의 처리

- 토론자가 보기에 발표문 내용 중 두 문단 정도가 논문의 전체 서술 기조와 다소 이질적이거나 직접 관련이 없는 서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문단 위치는 아래에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 다만, 1) 문단 내용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보강하여 본문 1장 후반부에 배치한다면, 전란 중의 의례 시행 양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1) (발표문 5쪽 24-26행) “이러한 명군에 대한 예우와 접대에 대한 부담은 … … 명군에 대한 지대를 논의하고 수행하였다.”

2) (발표문 16쪽 20-25행) “전란이 종식되기 전부터 정부에서는 충신·효자·열녀의 사례를 수집하였고 … … 전쟁을 삼강의 도덕 가치로써 기억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정치 행위의 결과물이라 보기도 한다.

145) 『潤松集』 권5, 「祝文禮林書院移建時告文」, “創建舊院, 幾乎百年。春秋俎豆香火罔愆。坤靈呵護, 兵燹不及。邑人相慶廟貌如昨。… …”

146) 『승정원일기』 2371책, 현종 5년 9월 18일, “… … 則肅廟朝庚申年文忠公金宗直所享密陽禮林書院火災後, 依前額號, 令該館繕寫下送, … …”

▶ 제3발표 ◀

일제 총동원체제하
'가사사용인' 억제 정책과 '식모난(食母難)'

발표: 이아리(서울대학교)

토론: 이송순(고려대학교)

일제 총동원체제하 ‘가사사용인’ 억제 정책과 식모난(食母難)

이아리
서울대학교

목 차

서론

1. 총동원체제하 정책변화와 가사서비스노동 억제

- 1) 전시 여성노동력 동원과 ‘가사사용인’ 억제 정책
- 2) 가사노동자 수급의 비공식화

2. 전시의 ‘식모난’과 여성의 구직

- 1) 민간의 ‘식모난’ 심화
- 2) 여성들이 겪은 전시 ‘식모난’의 일상

결론

서론

일제 식민지기 중에서도 1930년대 말 이후 총동원체제기는 전선의 후방까지 극단적인 전쟁 동원을 위해 재조직하고자 했던 시기였다. 이때 직접적인 전쟁 동원만을 시야에 넣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남성 중심의 군수공업 노동 동원이나 병력 동원만을 주시하기 쉽다. 그러나 전시에 ‘총후(銃後) 부인’, 혹은 ‘군국(軍國)의 어머니’를 강요 받았던 여성들 또한 적극적인 동원에서 예외는 아니었으며, 전쟁 상황은 여성의 노동 조건도 크게 굴절시켰고 평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후방의 일상이 재편되게 만들었다. 이렇듯 전쟁은 비일상적인 조건의 일상을 만들고, 전선의 후방에는 전시의 왜곡된 일상을 딛고 삶을 꾸려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제말 전시체제기 후방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식모’와 같은 가사노동자들을 둘러싼 변화이다. 한국사회에 가사노동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일제 시기였으며 곧 조선인 여성들의 대표적인 비농업직 일자리가 되었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경제공황과 함께 심화된 실업난 속에서도 주요 도시 직업소개소의

식모 알선과 고용만은 매우 활발하였으므로, 당시 언론은 이러한 양상을 두고 “어멈 (식모) 전성기”라 부르기도 하였다.¹⁴⁷⁾ 그런데 총동원체제 하에서 일제 당국은 경제 통제책을 통해 각 가정의 가계 상황까지 통제하고자 했고 전시 노동부족 속에서 여성 노동력의 동원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므로, 전시노동력 동원과 상관이 없어보이는 가사서비스노동 인력의 팽창은 이 시기에 갑자기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가사노동자의 고용을 둘러싼 전시 조건은 가사서비스노동, 곧 식모일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으며, 당대의 시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 연구는 일제 말 전시체제하의 가사서비스노동을 중심으로 전쟁 상황이 당대인들의 일상과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어떻게 규정지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1. 총동원체제하 정책변화와 가사서비스노동 억제

변화는 일제 당국이 가사서비스노동을 ‘불요불급(不要不急)’한 노동으로, 전시 통제 경제의 운영과 여성노동력 동원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한 데서 출발하였다. 1930년대 말 본격적인 총동원체제에 돌입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여성들에 대해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때 10대~20대 미혼 인구가 다수 종사하고 있는 ‘가사사용인’이 처음으로 문제시되었다. 또한 1930년대 내내 가사서비스노동이 팽창한 배경에는 농촌이탈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농촌을 떠난 조선인 여성들과 가사노동자가 필요한 가정을 매개해 주던 주요 도시의 공립 직업소개소가 있었는데 전시의 정책들은 이 두 가지를 크게 변화시켰다.

1) 전시 여성노동력 동원과 ‘가사사용인’ 억제 정책

직업소개소를 중심으로 보면, 노동력 수급에 행정력을 개입하고자 하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시도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들어서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각 도시 인 사상담소에서 공영 직업소개소를 분리시켜 공영 직업소개소 체제를 만들고 나서 이 직업소개소를 통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31~1933년 공민구제토목사업(窮民救濟土木事業), 1932~1934년의 시국응급구제공사(時局應急救濟工事), 1934년부터의 노동자이동소개사업 등을 시행하였다.¹⁴⁸⁾

그러나 1930년대 후반까지도 직업소개소 사업의 <일반 소개>에 있어서는 당국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소개사업에 있어서 광공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기는 했으나 비교적 미미했고, 이것은 전시체제기에 직업소개소가

147) 『매일신보』 1929. 03. 25. 「어멈 全盛期 직업소개소 이월성적」

148) 近現代資料刊行會, 『(戰前 . 戰中期) 아시아研究資料 1) 植民地社會事業關係資料集 朝鮮編』21. 2005, 116쪽~251쪽.

노동력 징발을 위해 국영으로 재편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때 이전까지 계속된 상황이었다.

부산직업소개소의 주인이었던 스이즈 마사오(水津正雄)는 이 때의 상황에 대해 “조선의 직업소개소는 ‘무통제, 무권위, 또 비과학적, 고식적인 존재’이다”라고 단언하면서, 전반에 통하는 법규가 없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며 시설 공사립 십수개소의 직업소개소 간에 연락이나 통제가 없는데다가 심하게는 이름만 있고 실제 하는 일이 없는 곳조차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⁴⁹⁾ 그리고 그 3년 뒤에 경성부 직업소개소를 방문했던 익명의 필자 또한 “(인사상담소가) 황금정으로 이관하여 지금의 이름으로(직업소개소로) 불리더라도 60만 大京城의 것으로서는 다소 빈약하고 음울하여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이다. 단순히 실직자 소개나 빈민구제가 아닌 부업 장려기관, 사무원 및 노동자의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그 설비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¹⁵⁰⁾ 이처럼 직업 소개 업무가 일관된 업무 체계나 기준 없이 고식적으로 운영되는 속에서 각 직업소개소는 실제로 수요와 공급이 용이한 ‘식모, 하남(下男) 알선’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본격화된 전시동원체제는 상황을 급변시켰다. 전시체제의 노동력 동원은 크게 중일전쟁기와 태평양전쟁기로 대별할 수 있다. 중일전쟁기는 대륙침략을 위한 전시통제경제(戰時統制經濟)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한편, 국가총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통제와 동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 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일제는 이를 위해 각 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여 1939년 물자동원계획, 자금통제계획, 무역계획, 교통전력동원계획 등과 더불어 노무동원계획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40년부터는 일본으로의 노동력 송출을 위해 조선 내에서도 별도의 노무동원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조선에서의 노동력 재편성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노동력의 동원은 우선 노동력 조사와 등록을 실시하고 각 도별로 인원을 할당하여 행정기관을 통해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⁵¹⁾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된 이후에는 여러 노동이동 제한, 노동력 배치 법령을 일원화하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인원을 실제로 모두 동원하고자 하였으므로, 더욱 노골적인 조처들이 실제로 취해지기 시작했다. 1943년 10월에 발표된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에서는 ‘유휴노동력(遊休勞動力)’, ‘불요불급(不要不急) 노동력(勞動力)’의 군수산업 배치, 근로보국대의 강화, 징병검사자 중 징병되지 않은 자의 노동력 동원, 여성노동력의 적극적 동원, 수인(囚人) . 사법보호대상자 . 포로에 대한 노동력 동원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¹⁵²⁾

149) 水津正雄, 「職業紹介所の現況及將來に對する希望」 『朝鮮社會事業』 제11권 10월호, 1933. 10. 01.

150) 一訪問者, 「京城府職業紹介所雜感」 『朝鮮及滿洲』 349, 1936. 12.

151) 이상의, 앞의 책, 164쪽-221쪽.

152) 광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2, 73쪽-74쪽 ; 이상의, 위의 책, 256쪽-257쪽.

1944년에는 마침내 노동력 동원의 형태로 최고 수준에 속하는 징용이 실시되었다. 그해 2월에 전제조건으로서의 현원징용(現員徵用)을 거쳐 8월에 '현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 16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를 대상으로 일반징용(一般徵用)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연령 16세 이상 25세까지의 미혼 여성에 대해서도 '징용'을 실시했으나 조선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근로보국대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같은 해 11월에 '14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와 '14세이상 25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여자'로 한정했던 근로보국대의 연령 범위가 각각 '14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자', '14세부터 40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여자'로 확대되었다.¹⁵³⁾ 게다가 같은 달 여자정신근로령이 발표되어 해방 전까지 약 20만 명의 여성이 여자정신대로 모집되었다.

위와 같은 전시 총동원체제가 구축되는 속에서 가사서비스노동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처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조선총독부는 1941년 3월말을 기준으로 농촌 동원 인력을 파악하는 한편, 가사사용인의 경우 접객업 및 기타 유업자와 함께 "전시하에 '불요불급'한 직업"으로 인식하였으며, 가사사용인 종사자 중 50%의 노동력을 전시 산업에 동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¹⁵⁴⁾ 이 시점은 특기할 만한데, 1940년 9월 "불요불급 산업"에 12~30세의 청소년 남녀를 허가없이 고용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고입제한령>의 공포 당시만 해도, 조선의 경우는 여성을 제외하여 일본 본국과 달리 식모나 여급의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정도로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¹⁵⁵⁾

1943년 9월에는 더욱 노골적인 억제책들이 경성부에 의해 시도되는데 그중 하나는 경성부 조례 제32호로 용인세(庸人稅)를 신설한 것이다.¹⁵⁶⁾ 이 조례는 식모와 머슴을 포함하는 용인과 여급 등을 포함하는 급사의 고용에 특별세를 신설한 것으로, 용인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용인 1인당 1년에 2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¹⁵⁷⁾

1943년 9월 경성부조례 제32호

제1장 총칙

제1조

본부는 다음의 특별세를 부과한다.

- ① 특별영업세(이하 간단하게 영업세라 칭함)
- ② 잡종세

-중략-

153) 광건흥, 위의 책, 76쪽-77쪽.

154) 「朝鮮に於ける勞務給源の調査の結果概要」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15, 한국학술정보 주식회사, 2000, 318-319쪽. 이 외에 접객업 종사자 중에서는 15%, 농업유업자 중 5~10% 정도, 무업자와 기타 종업자 등 소위 유희노동력의 경우는 80% 정도까지 추출한다는 계획이었다.

155) 『조선일보』1940.06.03. 「朝鮮엔 女子를 除外!」

156) 『매일신보』1943. 08. 18. 「女給,食母에도稅金 京城府서11월부터傭人,給仕稅徵收」

157) 1943년 9월 경성부조례 제32호, 『예규유집』, 1944, 315쪽(서울역사편찬원, 2017, 『(서울 근현대사 자료집2) 경성부 법령 자료집』)

제3장 잡종세

제16조

잡종세는 다음에 게시하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혹은 점유하거나 또는 행위 혹은 영업을 행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① 전주(電柱)
- ② 금고(바깥 체적 10입방척 미만의 것 및 휴대 금고를 포함하지 않음)
- ③ 업층(을중 또는 특별수렵면장을 받지 아니한 자가 소유 혹은 점유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 ④ 개(식용으로 쓰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 ⑤ 용인(傭人)(영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및 임시 용인을 포함하지 않음)의 사용
- ⑥ 급사인
- ⑦ 예기

앞 항에서 급사인이라 칭하는 것은 요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객석에서 시중들며 접대를 하는 여급, 작부, 중거(仲居),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

다음에 게시하는 물건, 행위 및 영업에 대하여는 잡종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광산, 송전용 국유 전주로서 대부 후 3년 이내의 것
- ② 생후 6개월 이내의 개
- ③ 연령 14세 미만 60세 이상의 용인의 사용
- ④ 연령 14세 미만의 급사인
- ⑤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물건
- ⑥ 부윤이 따로 잡종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급사인 또는 예기로서 휴업이 전월에 걸쳤을 때에는 그달 분의 잡종세를 면제한다. 다만, 휴업의 신고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용인의 사용자 및 그 동거가족 중 부과기일 현재 연령 14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의 자 또는 불구폐질자(不具廢疾)가 통틀어 3인이상 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3인과 관련하여 용인 1인에 대한 잡종세를 면제한다.

대부후 3년을 경과한 광산 송전용 국유 전주로서 부과기일의 직전 연도분의 대부료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잡종세를 면할 수 있다.

제18조

잡종세는 다음의 세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용인 1인당 연세 2원 / 급사인 1인당 월세 1원

(이하 생략)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용인세를 적용하는 대상은 연령으로 14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한정하여서, 군수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가사서비스노동에 소요되는 것을 가능한 억제하고자 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경성직업소개소의 업무 중에서 식모 알선만이 폐지되었다.

당국이 여성 노동력 동원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결국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남성노동력의 동원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었다. 1943년에 이르면 중남부 지역에서 더 이상의 남성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조선총독부가

자인(自認)할 정도였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잠재노동력으로서, 그리고 남성노동력의 유출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여성노동력에 주목했다. 여성노동력의 동원은 크게 ① 농촌에서 농업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 ② 非軍需産業에서 남성노동력을 대체하여 남성노동력은 군수산업으로 동원하는 것, 그리고 ③ 중공업 부문인 광산노동력에 동원하는 것의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¹⁵⁸⁾ 특히 두 번째 방침을 위해서는 여성 노동력으로 지장이 없는 직종에는 노무조정령(勞務調整令)에 의해 남자 노동력의 고용, 사용, 취직, 종업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었고 ‘식모를 공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이 전시 선전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였다.¹⁵⁹⁾

2) 가사노동자 수급의 비공식화

가사노동자를 억제하려는 정책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 양상이 공식적인 장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주요 도시에서 가사노동자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며 그 소개를 담당하였던 공영 직업소개소의 국영화였다. 지방 사회사업시설로 출발하였던 공영 직업소개소가 1940년 1월 <조선직업소개령(朝鮮職業紹介令)>(1940.01.20. 제령 제2호)이 공포됨과 동시에 국영화되었다.¹⁶⁰⁾

그때까지 조선에서는 식민 본국인 일본과 달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의 직업소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와서 조선에서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업소개법령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 <조선직업소개령>은 1938년 일본의 <개정 직업소개법>(1938.04.01. 법률 제61호)을 모태로 함으로써¹⁶¹⁾, 이 시기 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일본 직업소개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개정 직업소개법>은 직업소개소를 국영으로 전환하면서 ‘직업소개’ 사업 자체를 국가기관의 의무에 귀속시킴으로써 노동력 수급에 대한 통치권력의 개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곧, <개정 직업소개법>의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직업소개사업의 민간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국가 주도의 노무 관리로 그 성격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¹⁶²⁾ 즉 일본 <개정 직업소개법>과 <조선직업소개령>은 똑같이 제1조에서 “정부는 노무의 적정한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본법에 의해서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직업소개법>의 제3조와 <조선직업소개령>의 제2조의

158) 광건홍, 앞의 책, 282쪽-285쪽.

159) 『매일신보』1945. 06. 11. 「<家庭과 文化> 식모업시 손수일하자 가용절약해서저축에협력」

160) 『조선총독부 관보』 제3889호, 1940.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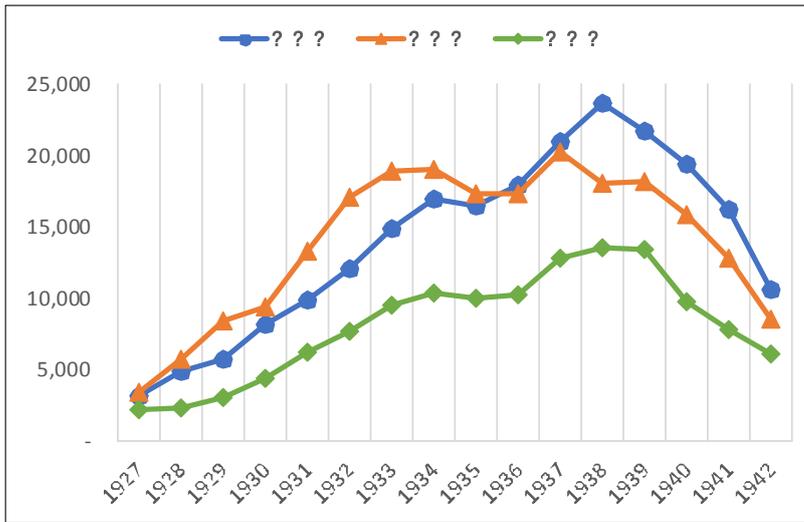
161) 『日本 官報』(제3371호) 1938.04.01.

162) 이아리,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 『민족문화연구』 제97호, 398쪽. 기존 1921년의 <직업소개법>에서 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는 주체로 설정되었던 “시,정,촌장(市町村長)”은 제5조에 의해 직업소개소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위로 그 역할이 축소(제5조), 또한 전시 산업의 노동력 동원을 대비하는 노무공급사업 및 노무자의 모집에 관한 조항도 추가되었다.(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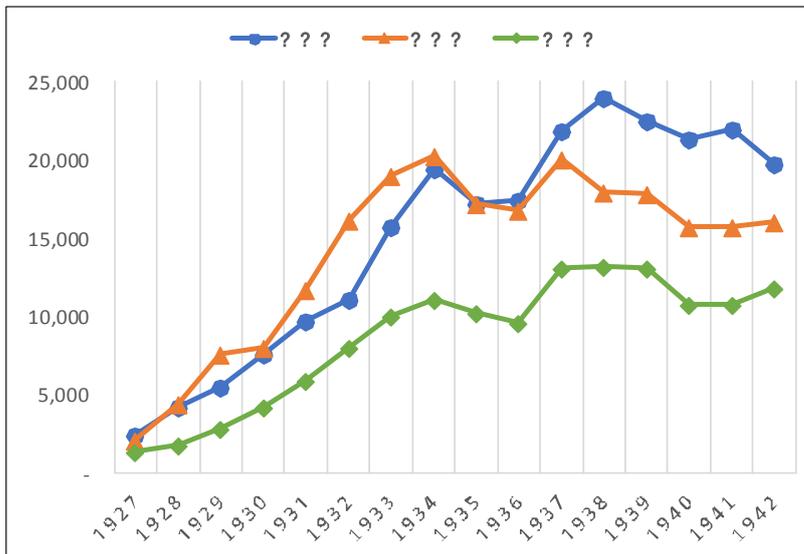
“정부는 직업소개사업과 아울러 직업지도 및 필요에 응해 직업보도 기타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을 행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같다. 따라서 1940년 <조선직업소개령> 또한 기본적으로 이 노무 관리 및 노동력 동원의 방향에서 설정된 것이었다. 이를 나타내듯 <조선직업소개령>의 시행규칙(1940.01.20. 조선총독부령 제7호) 안에는 무료직업소개업, 영리직업소개사업에 더해서 1938년 일본의 <개정 직업소개법>에 추가된 노무공급사업 및 노무자의 모집에 대한 조항까지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었다.¹⁶³⁾

이렇게 직업소개사업의 운영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면서 직업소개소는 국영으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직업소개소가 소위 ‘官斡旋’의 전시 노동 동원 기관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한 결과는 직업소개소의 소개 실적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163) 『조선총독부 관보』 호외. 1940.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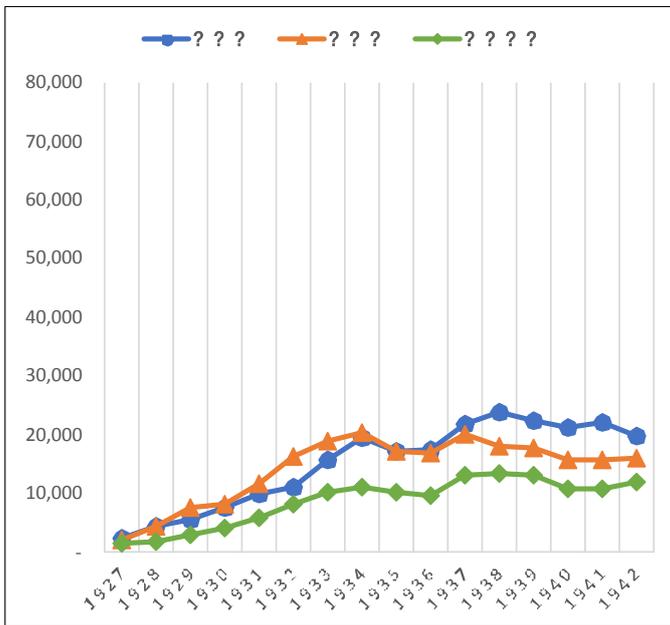


[그림 1-2] 공설 직업소개소 戶內使用人 소개 실적 (1927~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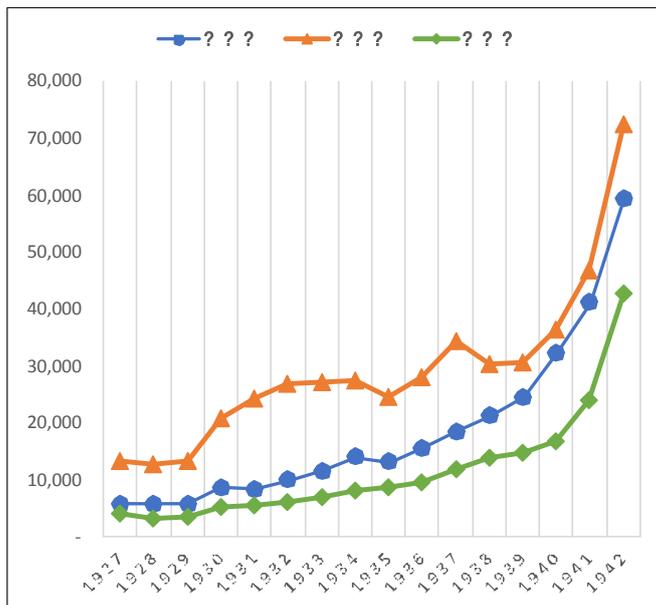


[그림 1-2] 공설 직업소개소 여성 소개 실적 (1927~1942)

출전: 1927년, 1928년, 1931년은 『朝鮮社會事業』 6-9, 7-6, 10-6
 1929년, 1930년, 1932~1938년은 각각『調査月報』 1-1, 2-4, 4-5, 5-8, 6-7, 7-7, 8-9, 10-1,
 11-2
 1939~1942년은『統計年報』해당 연도판의 자료로 작성하였다.



[그림 2-1] 공설 직업소개소 여성 소개 실적 (1927~1942)



[그림 2-2] 공설 직업소개소 남성 소개 실적 (1927~1942)

출전: [그림 1-1] 및 [그림 1-2]와 같음

비고: [그림 1-2]와 [그림 2-1]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단위를 달리하여 그래프의 기울기만 달라진 것이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설 직업소개소¹⁶⁴의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은 1940년이 되면 구인수, 구직수, 취직수가 모두 감소하였고 1941년과 1942년에는 더욱 가파른 추세로 감소하였다. 이것을 [그림 3-2]의 여성 직업 소개 실적과 비교하면,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과 여성 전체 직업 소개 실적은 1940년까지 매우 흡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 직업 소개 실적의 대다수가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직업소개소가 국영화된 1940년부터 양자는 상이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곧, 여성 직업 소개에 있어서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의 감소분을 보충한 다른 직업의 소개가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공업’이었다. 1939년~1942년 4개년동안 조선인 여성 ‘호내사용인’ 취직 수가 9905명, 7661명, 5365명, 4763명으로 감소해 갈 때, ‘공업’ 부문의 취직 수는 610명, 1290명, 3008명, 4065명으로 급증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림 3-3]과 [그림 3-4]와 같이 공설 직업소개소의 여성 소개 실적과 남성 소개 실적을 비교해보면 또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공설 직업소개소의 남성 소개 실적은 적어도 구인수와 취직수에 있어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결코 여성의 소개 실적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 말에 추월하기 시작하여, 1940년 이후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를 벌리고 있다. 남성 직업 소개 실적이 급증한 업종은 물론 공업이었다.

즉, 1930년대까지 도시 지역 사회사업시설을 표방하며 가사서비스노동을 주로 매개했던 공설 직업소개소는 1940년의 국영화 이후 남성 공업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 동원 기관으로 탈바꿈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시기에 와서 관알선의 노동 동원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는 데 그쳤지만, 여성노동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 시기도 직업소개소가 유명무실한 공백 상태는 아니었다. 가사서비스 노동의 매개를 직업소개소에 의지하고 있던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상황의 급변을 겪은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국영으로 바뀐 이후의 직업소개소는 1941년경부터는 식모 알선 의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으며,¹⁶⁵ 1943년 9월 마침내 식모 알선 업무만 폐지한다고 공표하였다. 공표 당시 신문에서 경성직업소개소장은 “직업소개 가운데 제일 번잡하고 전직원이 불쾌를 느끼는 것은 소위 식모알선”이었으며 그동안도 원칙적으로 식모 알선은 자제해 왔으나 “주부들도 결전에 총궐기하여 성전 완수에 돌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기에 9월 1일부터 당분간 식모 알선 업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⁶⁶ 12년 전 식모 알선 일이 아니면 찾아온 구직자를 냉담하게 대했던 직업소개소에서 이제는 식모 알선이 전 직원이 불쾌를 느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64) ‘공영’과 ‘국영’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공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65) 『매일신보』 1942. 05. 22. 「(家庭과 文化) 일업시 장세월 보내면서 식모 구하는 악폐 - 젊은 식모 공장 보내고 아씨는 팔걸고 나서라」

166) 『매일신보』 1943. 08. 30. 「主婦에勤勞의振鈴 - 職業紹介所에서食母의斡旋廢止」

가사서비스노동을 불요불급한 노동으로 규정하고, 행정력으로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이에 대한 소개 업무를 직업소개소에서 배제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식적인 영역에서 가능한 그 자리를 지우는 결과로 나타났다. 1943년 10월에는 식모를 이유로 상경하려는 자에게 퇴거 증명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보이는데,¹⁶⁷⁾ 퇴거 증명 없이 떠날 경우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은 강제로 가사서비스노동의 공급 요인을 차단한 것에 가까웠다.

2. 전시의 '식모난'과 여성의 구직

위와 같이 전시 정책은 가사노동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취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 증대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곧장 차단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국이 가사서비스노동의 공식적인 수급을 막은 것은 민간에 일종의 '식모난(食母難)'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래에서는 고용과 피고용의 입장 모두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식모난'을 겪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민간의 '식모난' 심화

1930년대 이래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었으며, 이미 1930년대 중반이면 식모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었던 조선인 가정에서부터였다.¹⁶⁸⁾ 소설가 염상섭은 1935년 신문의 기고글을 통해 급한 사정으로 가사노동자를 구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사정을 쓰고 있다. 30여명이나 되는 직업소개소의 식모 구직자들이 모두 일본인 집으로만 가려고 했다는 것이다.¹⁶⁹⁾ 간혹 일본인이 사는 남촌에는 식모 인플레이션인데 북촌 조선인 가정에서는 식모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되기도 하였다.¹⁷⁰⁾

이러한 양상은 1930년대 말이면 극히 심해져서 경성 직업소개소 문 앞에서 “식모 쟁탈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¹⁷¹⁾ 1939년과 1940년경의 언론은 ‘서울의 집집마다 식모를 구한다는 소리가 매일같이 날 정도로’ “식모 기근”이며,¹⁷²⁾ 전시 인적자원의 부

167)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業紹介所에서 強調」

168) 이 무렵 조선인 가사노동자들은 급료를 많이 주고 살림이 간편하며 하대받는 굴욕감을 덜 느낀다는 이유로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기를 선호하였다. 더 자세한 사정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 이아리, 「1920~1930년대 남의집살이 여성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 - '어멈'과 '오모니'에서 '식모'로-」 『한국근현대사연구』108, 2024.

169) 『매일신보』 1935. 07. 13. 「一日一文 - 食母」

170) 『동아일보』 1937. 11. 28. 「南村엔 食母 인플레, 北村엔 食母難의 頭痛」

171) 『조선일보』 1938. 12. 21. 「主客顛倒의 奇現象, 食母의 爭奪戰激烈」

172) 『매일신보』 1939. 07. 08. 「一人一言 - 食母饑饉 (洪善杓)」

죽을 겪는 다른 분야처럼 가정의 “식모도 식모난(求得難)”이라는 기사¹⁷³⁾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었다. 직업소개소의 ‘호내사용인’에 대한 구인 구직수를 다시 살펴보면(그림 1)), 구인수가 구직수를 초과하는 시점은 1938년부터이며, 이후 공설 직업소개소의 성격 변화와 함께 절대수는 크게 감소하지만 1942년까지도 그 구인수가 계속 구직수를 초과하고 있다.

당시 직업소개소를 묘사한 잡지 기사나 식모를 다룬 소설에서는 전시체제기 이후에도 식모를 구하고자 하는 조선인 가정의 사정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1939년 9월의 잡지 기사에 따르면, 경성 직업소개소 여자부에는 구직자보다 구인자수가 훨씬 더 많고, 구직자들이 다들 조선인 가정은 꺼리고 일본인 가정으로 가기를 원하여 “식모 하나 얻기가 금덩어리 얻기보다 더 힘이 든다”고 하며, 그 정경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¹⁷⁴⁾

보따리를 싸 가지고 시골에서 갓 올라오는 촌뜨기 하나가 들어오면 수십 명이 둘러싸고 우리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가자 하고 야단법석이 나지요. “우리는 식구도 단출하고 사랑 양반은 양복 생활을 하시어서 빨래도 없고 월급도 많이 줄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응. 남의 집 산다고 하대도 얹거니와 옷도 해주고 할테니 꼭 갑시다, 네.” 시골뜨기가 모처럼 서울 왔다 이 복새를 만나니 정신이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을 수 밖에. 그러자면 무엇 부족해서 안 가는 줄 알고 경매장에서 값을 올리듯 사원, 오원, 육원, 칠원...

게다가 구직자들의 눈에 옷을 잘 입고 인물이 좋으면 부자로 여긴다는 이야기에 각 집안에서 가장 얼굴이 잘나고 말을 잘하는 이를 직업소개소에 보내서 직업소개소 구인자 측에는 유독 미인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1940년 이후 전시 동원이 구체화 되면서 이러한 ‘식모난’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이 시기의 상황은 당대 쓰여진 문학 작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940년 1월에 연재된 짧은 콩트 소설에서는 아이가 셋인 조선인 가정에서 한 해 동안 5명의 식모가 들고 나갈 정도로 “식모난을 톡톡히 겪”다가, 직업소개소 어귀에서 순박해 보이는 한 여자가 월급도 옷도 필요없으니 밥만 먹여달라고 사정해서 데려왔더니 절름발이에 조막손이어서 아연실색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다.¹⁷⁵⁾ 이보다도 더 눈길을 끄는 소설은 1943년에 발표된 <식모난(食母難)>이라는 소설이다.¹⁷⁶⁾ 이 소설은 조카까지 포함해 7명의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 식모 한 사람만으로 집안일을 감당하기 어려워 식모를

173)『매일신보』 1940. 05. 03. 「食母도 求得難-돌 수도 안 돌 수도 없는 두통거리」

174)『조광』 1939.9. 「人事相談所 窓口에 버려진 人生的 喜悲劇 - 鄭圭哲」

175) 장덕조, 「젊은 아내와 식모」 『매일신보』 1940.01.05.

176) 유진오, 「食母難」 『滄浪亭記』 정음사, 1963. (이 소설은 본래 1943년 3월 잡지 『放送之友』에 「가족부대」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유진오의 단편 소설집이 출판되면서 「식모난」으로 이름을 바꾸어 소설집 안에 실리게 되었다.

더 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정을 그리고 있는데, 전시체제기의 제반 조건이 식모가 더욱 귀해지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리해 식모가 없다, 식모 구하기가 힘들다고 온 세상이 떠들어대도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 지나던 일호의 집도 차차 심각한 식모난으로 빠져 들어갔다. (중략)

전시하에서 예전과 같이 사치한 풍조는 보이지 않으나 그래도 길에는 가벼운 봄옷에 아담한 단장을 한 젊은 여자들이 쏘다니고 한다. 그러나 시절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간에 일호의 집만은 여전히 식모타령뿐이다.

“전갈음 이맘 때가 되면 시골여자들이 몰려 올라와서 식모가 번창을 했는데“

이것은 일호의 한탄이다.

“그러게 말이우. 그 많던 시골여자들이 모두 어디로 갔어.”¹⁷⁷⁾

주인공 일호의 가정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불과 반년 동안만 9명이나 되는 식모가 들고 나갔다. 식모의 임금이나 위상도 상당히 높아져서, 일호네는 식모의 월급으로 16월이나 주고 있으며, 마지막 식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붙잡아두기 위해 두달 치 월급을 미리 주고 겨울옷까지 해주었으나 그녀는 김장이라는 큰일을 하기 직전에 이 집에 들어온 지 딱 두 달이 되는 날이라며 나가버린다. 소설은 결국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동원되어 온 식구의 힘으로 김장을 해내고 그 이후로는 식모 없이 생활하며 가족들도 더욱 건강해졌다는 계몽적인 마무리로 전시 담론에 부합하며 끝을 맺는다. 그러나 소설에서 줄곧 그려지는 양상은 각종 전시 총동원 정책이 구체화 되는 1940년 대에도 식모를 구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많았으며 그에 따라 가사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1941년경부터 식모 알선을 가능한 거부해 온 경성직업소개소가 1943년 9월부터는 식모 알선 업무만을 공식적으로 폐지해 버렸지만, 식모를 구하고자 하는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식모 알선 업무를 공식적으로 정지한 이후에도 매일 50~60명은 식모를 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로 찾아왔다고 한다. 다만 식모로 일하기 위해 찾아오는 구직자는 앞서 살펴본대로 본적지에서의 퇴거 증명 거부 등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크게 감소해 있었는데 그래도 하루 15~16명은 되었다. 게다가 국영 직업소개소가 식모 알선을 해주지 않자, 식모를 구하려는 구인자들은 사설의 사회사업기관인 화광교원 직업소개소로 더욱 몰리게 되었는데, 당시 화광교원 직업소개소에는 하루에만 무려 300명 이상의 구인자가 다녀갔다고 한다.¹⁷⁸⁾

177) 유진오, 위의 책, 208쪽.

178) 『매일신보』 1943. 10. 05. 「식모를 없애버릴 때 여자 할 일은 꼭 자기 손으로 -職業紹介所에서 強調」

2) 여성들이 겪은 전시 ‘식모난’의 실상

그러나 이러한 ‘식모난’의 상황은 구직이 필요한 여성들을 단번에 유리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했다. 생계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자가 되는 길은 여전히 가장 우선순위의 선택지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보면, 1939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도가 피해를 입은 광범위한 규모의 가뭄 피해가 발생하여 조선의 농촌에 큰 타격을 주었다.¹⁷⁹⁾ 당시 치안상황에 대한 보고를 보면 남선 지역에서 취업을 위해 상경하는 인파가 워낙 많아 그 길목에 있는 민가들은 먹을 것을 요구하는 이재민들 때문에 곤혹을 치렀으며, 인천과 경성에 유입된 이재민 중 취로를 하지 못한 자들은 시정을 배회하고 역두, 길모퉁이, 공원, 다리 밑 등에 기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남에서는 도내 걸인이 약 100명이 증가하였고, 일본 내지 도항 출원자도 늘었다고 하며, 경남에서는 생활난으로 몸을 파는 부녀자의 사례가 26건이 발생했다.¹⁸⁰⁾

이러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1939년과 그 이듬해인 1940년에는 한해를 입은 지역에서 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경성으로 올라와 직업소개소를 찾으면서 경성직업소개소에 구직자가 쇄도하고 있는 사정이 신문 지면에 묘사되었다. 다음은 그중 하나로 1939년 늦여름의 일을 말하고 있는 신문의 기고글이다.¹⁸¹⁾

... 전차에서나 거리 모퉁이 모퉁이에서 보따리짐 싸 가지고 밀려 다니는 남녀노소들, 더욱이 직업소개소에 밀려드는 그 사람들 분명 남조선 각지의 한재(旱災)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겠지요. 할머니, 어머니, 손녀 삼대가 다 상경하여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업이라는 숙어를 쓰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밥을 구하고 있어요. 남조선뿐이고 북조선뿐입니까? 이 한재야말로 거진 전조선적인 걸요. 서울서도 비가 올 듯 올 듯 하면서 벌써 얼마나 오지 않습니까? 음료수까지 없어서 아우성이라는 신문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비가 오지 않으니 마음속까지가 타오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거리에 모여드는 남부여대(男負女戴)한 보따리꾼들, 직업소개소에 와서 행여나 식모로라도 데려가 주었으면 하고 쳐다보고 서있는 그들의 처지를 비를 맞지 못하는 땅 위에 사는 우리로서 어찌 지나가는 행객의 일거니즘 생각만 되겠습니까...(강조-필자)

179) 朝鮮總督府 司政局 社會課, 『昭和十四年 旱害誌』, 1943. 1939년의 대가뭄이 식민지 조선 사회에 끼친 여파 및 그 대응을 기후사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고태우, 「기후, 날씨와도 싸워야했던 일본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민-길었던 한 해, 1939년 조선 대가뭄의 양상과 그 여파」, 『역사와 현실』 118, 2020

180) 『高等外事月報』 제2호 1939년 8월, 18쪽.

181) 『조선일보』 1939.09.05. 「거리의 대조-김성철(金聖哲)」

할머니, 어머니, 손녀 삼대가 다 상경하여서 직업소개소에서 식모일을 찾을 정도로 절박해진 가뭄 피해 상황은 이듬해 1940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아래의 기사는 1940년 6월 경성 직업소개소에 가뭄 피해 지역에서 상경한 부인들로 인해 여성 구직자들이 급증하였으며, 그들은 일본인 가정의 가사노동자인 “조추[女中]”로만 가려고 하여 직업소개소 직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¹⁸²⁾

식모 고용[女中 奉公]을 목표로 낭자군(娘子軍)이 쇄도 - 한해(寒害) 지방에서 경성으로

경성직업소개소는 국립이 된 이래 착착 계획을 수립해서, 구인, 구직의 알선에 만전을 기해 오는데, 최근은 구직자 쇄도로 각 계원은 轉手古舞의 현상이다. 지금 최근의 구인구직풍경을 타진해보면 전월의 일반구직자는 3,500인 구인자는 1,200인 반수 이상은 미취직이 되었는데, 특히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조선부인의 구직자가 우르르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원인은 한해 지방에서 밀어닥쳤기 때문인데 게다가 이 구직자들은 내지인척으로의 여중 봉공을 유일의 목표로 삼은 모양으로, 조선인척의 구인자로는 전혀 눈도 주지 않고 있어서 직업소개소로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板挾이 되어, 계원도 그 설명에 땀투성이의 분투를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그리고 이렇게 생계가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 있어 최우선의 생계책이 가사서비스노동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공인을 받은 것이기도 하였다. 동아일보는 1939년 독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자문을 해주는 <가정고문란>을 신설하여 1940년 8월에 신문이 폐간되기 전까지 유지한 바 있었다. 이 고문란에 투고되는 갖가지 사연들 중에서도 술집 작부로 일을 시키는 양부모를 떠나고 싶다는 사연이나¹⁸³⁾, 남편의 의심과 폭행으로 집을 떠나고자 하는 상황¹⁸⁴⁾, 혼인 후 알고 보니 남자에게 본처가 따로 있었다는 사연¹⁸⁵⁾ 등에 대해 필진들은 자주 “차라리 식모 노릇을 할지언정” ‘떳떳하게 살라’고 권하고 있다. 즉, 이 시기에도 여전히 가사서비스노동이 하층민 여성들의 자구책으로서 기능하였고,接客업 등의 다른 직종에 비해 ‘떳떳한 일’로 여겨지는 사회적 승인이 자리잡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시체제가 노동력 수급에 통치 권력이 직접 개입하고자 하면서 직업소개소가 국영화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공설 직업소개소의 ‘호내사용인’ 소개 실적이 급감하는 대신 남성/공업 중심 노동력 수급의 알선이 그 업무의 핵심이 되었던 사정은 이미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때도 직업소개소를 둘러싼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여전히 현실과 정책의 추진 방향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표 1]에서 확인할

182)『朝日新聞』 外地版 1940. 6.22. 「女中奉公目指し娘子軍が殺到 - 旱害地方から京城へ」

183)『동아일보』 1939.05.04. 「가정고문란-화류계를 벗어나고 싶는데 양모를 버리게 됩니다」

184)『동아일보』 1940.02.24. 「家庭顧問欄(가정고문란)-기생노릇은 못하겠는데 살길이 없습니다」

185)『동아일보』 1940.05.21. 「家庭顧問欄 결혼한지 일년만에 파탄이 일어났어요」

수 있듯이 직업소개소의 국영화 직후인 1940년에도 경성직업소개소의 소개 실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호내사용인’ 소개였던 사정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다음의 표에서 월별 소개 실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월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가을 이후로 취직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한 해 동안 그 소개 실적은 꾸준하게 이어졌다.

[표 1] 1940년 경성직업소개소 ‘호내사용인’ 월별 소개 실적

월별	민족별	구인수			구직자수			취직자수		
		남	녀	계	남	녀	계	남	녀	계
1월	일본인	17	34	51	16	10	26	9	10	19
	조선인	44	666	710	41	354	395	26	301	327
2월	일본인	5	32	37	5	6	11	3	4	7
	조선인	41	651	692	28	415	443	20	323	343
3월	일본인	0	11	11	0	15	15	0	11	11
	조선인	57	508	565	69	504	573	52	504	556
4월	일본인	0	8	8	0	8	8	0	6	6
	조선인	16	615	631	51	523	574	10	453	463
5월	일본인	0	12	12	0	10	10	0	10	10
	조선인	30	807	837	40	656	696	21	593	614
6월	일본인	0	18	18	0	17	17	0	17	17
	조선인	38	853	891	43	576	619	27	478	505
7월	일본인	0	28	28	0	25	25	0	21	21
	조선인	59	745	804	80	505	585	42	381	423
8월	일본인	0	16	16	0	19	19	0	10	10
	조선인	87	815	902	93	586	679	70	404	474
9월	일본인	0	8	8	0	14	14	0	6	6
	조선인	73	591	664	99	432	531	58	336	394
10월	일본인	0	32	32	0	23	23	0	13	13
	조선인	84	600	684	125	439	564	59	349	408
11월	일본인	0	16	16	0	18	18	0	6	6
	조선인	70	463	533	84	347	431	62	261	323
합계	일본인	22	215	237	21	165	186	12	114	126
	조선인	599	7314	7913	753	5337	6090	447	4383	4830
	합계	621	7529	8150	774	5502	6276	459	4497	4956

출전: 京城職業紹介所 編, 昭和16[1941], 『城職業紹介所々報 : 特輯號』, 105~106쪽. <제8표 戶內 使用人>

당시 소장의 이름으로 연일 신문 지면 등을 통해 선전을 펼치고 있던 경성직업소개소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不要不急의 가정에서 조추[女中]의 사용은 중지해야 한다”고 극력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⁸⁶⁾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호내사용인을 희망하는 여성들 중 섬유 공업계로 취업하기에 적당한 젊은 연령의 구직자에게는 공업 취업을 종용하였으나, 이들을 공업에 배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즉 공업 부문에서는 아직 기숙사 등의 설비가 없는 곳이 많아 지방 출신자들이 경성부내에 몸을 거처할 수 없는 한계로 취로(就勞)할 수 없으며, 조추로 일하면 대개 식사를 제공하고 평균 10원의 급료를 받는 데 비하여, 여공으로 일하면 미경험자의 일당은 25~35전이면서 그 반 정도는 식비로 차감되는 등의 조건으로 구직자들에게 공업 취업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¹⁸⁷⁾ 비슷한 맥락으로 1939년 기사에서도 직업소개소를 방문한 기자가 “남의 집에 보기보다는 공장에 들어가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묻고, 그 대답으로 ‘기술을 일부분 배운다고 해도 숙련공은 못되니 소녀들은 애보기로 들어가나 공장 직공으로 들어가나 수입이나 기타 조건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¹⁸⁸⁾ 즉, 공업적 일자리가 기숙사와 식당이 있는 대공장을 제외하면 숙식의 제공이 어려운 반면, 가사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 받는다는 점이 여전히 유효했던 것이다. 이처럼 증가한 공장 노동 일자리 모두가 여성들에게 즉각 가사서비스노동을 대체할 만한 사정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한편, 전쟁 말기로 갈수록 여성노동력에 대한 동원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졌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1940년대 농촌 지역에서 기간적 남성노동력이 대거 유출된 것을 여성노동력이 대체하면서 여성유업자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지만,¹⁸⁹⁾ 일제 당국은 여성노동력에 대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과잉인구가 있다고 보아, 1943년 이후 여성노동력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동원을 추진하였다.

1943년 10월 8일 조선 총독부는 여성노동력 동원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는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요강」을 결정하여 여성노동력 동원을 전면화 하였으며, 1944년 8월 23일에는 일본과 동시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미 법령이 공포되기 이전부터 여자근로정신대를 통한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던 동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이었다.¹⁹⁰⁾ 1943년 이전에는 주로 관에 의해 할당되어 동원되거나 근로보국대에 의한 방식으로 여성노동력이 동원 되었었다면, 1943년 이후에는 여자근로정신대와 국민징용방식에 의해

186) 京城職業紹介所 編, 『昭和15[1940]年 京城職業紹介所々報 : 特輯號』, 1941, 88쪽.

187) 京城職業紹介所 編, 위의 책, 88-89쪽.

188) 『조선일보』 1939.02.24. 「음울한 날시도 개이고 명량한 취직의 봄」

189) 호리 가즈오 저, 주익종 옮김, 『한국 근대의 공업화: 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전통과 현대, 2003, 332-334쪽.

190)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52-55쪽.

동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1944년 이후 각 도 및 부의 근로동원과 및 노무과 등에서는 여성들을 조선 내 각 공장으로 알선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실제 정신대 동원 사례를 보면 마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구장 등의 말단 행정 담당자를 통해 그 마을에서 동원 가능한 여성을 파악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원하였는데, 마을별로 할당된 인원이 있어 그 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군에 의한 군속의 동원이나 여학교에 의한 노동 동원도 이루어졌다.¹⁹¹⁾ 1943년 이후의 노동 동원이란 강제성이 매우 강화된 형태였던 것이다.

그런 한편, 1930년대말 전시체제기에 더욱 확대된 접객업, 유흥업과 식민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접객업은 1943년 이후로 조선 안에서는 억제되지만 역외로 팽창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공창제에 의한 창기는 조선 안에서도 온존하였다.¹⁹²⁾ 노동력 징발에 끌려가지 않은 채 생계수단이 필요한 여성들이 유출된 것은 접객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도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이 1943년, 1944년, 늦게는 1945년 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¹⁹³⁾

결국 일제 전시체제기 말 노동력 징발과 군 ‘위안부’ 동원, 인신매매 등에 따른 비자발적인 이주로 여성 노동력은 유출되었으며,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공식적인 시야에서 잠적해 버렸던 가사서비스노동은 일시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전시체제기에도 그에 대한 수요나 사회적 역할은 여전했던만큼, 가사서비스노동을 비공식화하고 공급의 경로를 막아선 일시적인 강제가 사라지면 가사서비스노동의 팽창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방 이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가사노동자들이 다시 등장하였다. 1949년 가사사용인이란 호칭으로 8만 5,849명이 조사되었고,¹⁹⁴⁾ 1955년의 조사에서도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여성 53,300명, 남성 3,200명, 합계 56,500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았다.¹⁹⁵⁾ 게다가 1957년 미성년 직업 통계에 따르면 14세부터 19세 이하 미성년자 중 소녀들이 46만 8,800여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식모살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¹⁹⁶⁾ 실제 가사서비스노동을 수행하는 인구는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컸을 것이다.

191) 김미정, 위의 논문, 129-149쪽.

192) 박정애, 「총동원체제기(總動員體制期)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유흥업(遊興業)억제 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2009

193) 1945년의 사례는 1945년 3월에 공장 일꾼을 모집한다는 사람들을 만나 따라 나선 것이 취업사기로 이어졌다. 한국정신대연구소 지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 2003, 두 번째 피해자 사례.

194)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111쪽.

195) 외무부, 1955년 직업(중분류)과 연령별 14세 이상 인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S&tblId=DT_999S_035058&conn_path=I3)

196) 이임하, 앞의 책, 112쪽.

또한 한국 근현대사를 경험한 주체로 신문 인터뷰를 했던 1932년생 여성의 사례는 가사서비스노동이 일제 전시체제가 말기에 일시적으로 잠복되었다가, 여성 노동을 둘러싼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해방 이후까지 그 근간을 유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녀는 6살 때 식모살이를 시작하여 8살인 1939년에는 '수양딸'이라는 명목으로 남의집살이를 했으나 그 역시 사실상 식모살이었다고 증언한다. 1년 남짓 일하다가 양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방을 맞았다. 그녀에게는 해방과 미군정의 시기도 배고픈 시기roman 기억될 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한국전쟁이 터지자 피란민들을 따라 도망을 가서 다시 식모살이를 했으며, 결혼 후 첫 딸을 낳고 나서도 찾을 수 있는 생계책은 유모 생활이었다.¹⁹⁷⁾ 결국 전쟁 말기의 가사서비스노동에 대한 억압은 하층민 여성들의 생계와 노동을 둘러싼 구조적인 조건은 바꾸지 않은 채 강제된 일시적인 것이었다.

결론

일제 총동원체제 하에서 전시 동원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진 가사서비스노동은 정책적으로 억제되었으나,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나 궁핍한 여성들의 생계책 역할을 했던 사회적 기능은 여전하여, 가사노동자가 당국의 공식적인 시야에서만 잠적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전시의 극도로 통제적인 지배체제 속에서 원거리 취직도 마다하지 않았던 절박한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또한 가사노동자를 비공식화하고 공급의 경로를 막아선 일시적인 강제가 사라지면 머지않아 가사노동자들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197) 『경향신문』 2008.08.03. 「현대사 60년의 주인공들 (1) 식모」
https://www.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080803192034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참고문헌】

1. 1차 자료

『朝鮮總督府 官報』, 『日本 官報』
『동아일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朝日新聞』 外地版, 『경향신문』
『高等外事月報』, 『별건곤』, 『조광』, 『朝鮮及滿洲』, 『朝鮮社會事業』,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 1930. 1940년판
, 『朝鮮總督府調査月報』 각 연도판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 연도판

京城職業紹介所 編, 『朝鮮職業紹介令實施に就て』, 1940
, 『昭和15[1940]年 京城職業紹介所々報：特輯號』, 1941

2. 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Ⅱ』, 한울, 1997
近現代資料刊行会, (戰前・戰中期アジア研究資料 1) 『植民地社會事業關係資料集 朝鮮編』 20, 21, 2005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근현대사 자료집2) 경성부 법령 자료집』, 2017

3. 2차 문헌

곽건홍,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2
유진오, 『滄浪亭記』 정음사, 1963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해안, 2006
이송순, 『일제말 전시 총동원과 물자 통제』, 동북아역사재단, 2021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호리 가즈오 저, 주익중 옮김, 『한국 근대의 공업화: 일본 자본주의와의 관계』, 전통과 현대, 2003
고태우, 「기후, 날씨와도 싸워야했던 일본제국주의, 그리고 식민지민—길었던 한 해, 1939년 조선 대가뭄의 양상과 그 여파」, 『역사와 현실』 118, 2020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김 원, 「근대화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 '식모'(食母)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집 1호, 2004
金載昊, 「물장수와 서울의 水道 -'측정'문제와 제도변화-」 『經濟史學』 제23호, 경제사학회, 1997
김정화, 「1960년대 여성노동 - 식모와 버스안내양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1, 2002
박정애, 「총동원체제기(總動員體制期)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유흥업(遊興業)억제 정책과 조선의 접객업 변동」 『한일민족문제연구』 2009
이아리, 「1920~1930년대 남의집살이 여성들의 처우와 인권 문제 - '어멈'과 '오모니'에서 '식모'로-」 『한국근현대사연구』 108, 2024.
, 「일제하 직업소개사업의 이원적 구조와 영리 소개업 통제의 한계」 『민족문화연구』 제97호, 2022

「일제 총동원체제하 ‘가사사용인’ 억제 정책과 ‘식모난(食母難)’ 에 대한 토론문

이송순
고려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 근대(일제강점기~1960년대) 여성 노동과 직업에서 양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가사노동’이라는 노동의 특성으로 근대적 사회적 노동의 범주에서 ‘특수한’ 형태로 취급되었던 가사사용인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대 전쟁은 국민국가 단위로 내부의 모든 생산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를 띠니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1945년까지 8년간의 전쟁은 제국 본국과 식민지 전역에서 물자와 인력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습을 빌미로 가정 내에 머물며 무급의 노동을 제공하는 여성을 사회적 노동력으로 호명하였습니다.

1920~30년대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직업이 된 가사사용인을 전시하에서는 ‘불요불급한 노동’으로 취급하고 이들을 군수생산과 직결되는 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미 사회적 노동화된 가사사용인을 ‘쓸데없는 가정노동’으로 선전하며 행정적으로 억제하려는 총독부의 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제 전시 총동원체제의 일면과 그에 따른 전시 후방의 일상, 삶의 모순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 의의와 함께 몇 가지 논의해 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사사용인 억제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대응

1920년대 중반 이후 가사사용인의 수요 창출은 1) 조선인 가정의 행랑페지론 대두와 행랑어머님의 가사사용인으로서의 전환(경제적 고용관계로 전환) 2) 재조일본인 가정의 정착과 가사노동의 임노동화 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1930년대 근대 도시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경성부의 근대도시화,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도시 신가정 모델의 대두)와 결부되면서 가사노동시장이 팽창되었습니다.¹⁹⁸⁾

가사사용인을 고용하는 주체 중 조선인 가정의 가사사용인 고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8) 이아리, 「한국 근대 가사서비스노동의 형성과 변동」,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참조.

경성에는 전통적인 상층 양반가들이 많았고 이들은 신분제하에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신분관계에서 경제적 고용관계로 전환하여 다수의 가사사용인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편 문화적 담론으로서 ‘신가정(Sweet Home)’의 신여성 주부의 가사사용인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가정이 당대 ‘식모폐지론’ 담론의 주 대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시체제 하에서 총독부의 가사사용인 억제정책이 시행될 때 전통적 상류 양반가정과 신가정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부재 대지주나 고위관료, 전문직종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정책적 억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가사사용인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친일협력적’ 사회적 지위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신가정·신여성의 대응은 결국 총독부의 정책을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인지, 절대적 가사사용인의 공급부족 상태에 밀려 포기하게 되는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전히 일상에서는 수요가 있었으나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가사사용인의 수요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식모난’을 주장하는 주 계층은 조선인 신가정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사사용인 부족이라는 현실에 대한 이들의 대응양상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정치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인 신가정의 가사사용인 수요에 대한 변화 양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사사용인, 이들의 행보는?

1920~30년대를 거치며 조선 내에서 가사사용인(주로 미혼여성)이 증가하게 된 것은 농촌사회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노동력 배출적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 초반 세계대공황과 농업공황에 따른 농촌경제의 악화는 전통적으로 터부시되었던 미혼 여성의 출가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의 무학력 여성이었기에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용될 수 있는 하위노동자의 풀(Pool)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사사용인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여성 직업 종류에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노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30년 『국세조사보고』에서도 공업분야 노동자나 상업분야 고용인과도 다른 가사사용인이라는 별도의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 당시 여성 가사사용인은 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본제국주의의 전시 여성 동원은 여성이 총력전에 참여하는 ‘국민(황국신민)화’를 명분으로 하였지만,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 하에서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가정은 전시활동력의 기지이고, 그 기지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 결전하 부인의 최대 책무’라는 언설 하에 어머니(母)로서, 가정의 생활담당자(주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열등노동력’으로서 가정 바깥(사회)에서도 동원되어야 하는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역할도 부여되었습니다.¹⁹⁹⁾ 이러한 논리

속에서 가사사용인은 '어머니'나 '주부'라는 가정의 수호자가 아니었기에 가사사용인은 사회적 노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잉여노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의 측면이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가사사용인 주체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보를 결정해나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강제동원(정신대, 보국대, 위안부)의 대상으로 추출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본 토론에서는 일단 비켜가겠습니다.

여성을 사회적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방법으로 일제는 '여성전담직업'을 설정했습니다. 일본정부는 1943년 9월 23일 「노무조정령시행규칙 제10조-2 규정에 의해 남자종업원의 고입(雇入)·사용·취직 및 종업을 금지하는 직업 지정」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직업 17종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자가 해서는 안되는 여자만의 직업이 생긴 것입니다. 그 직종은 사무보조자, 현금출납계, 小使·급사·受付係, 물품판매업의 점원·賣子(판매원), 행상·呼賣, 외판원·注文取(주문받는 사람), 집금인, 전화교환수, 出改札係, 차장, 승강기운전계, 番頭(상점지배인·카운터)·客引(호객꾼), 給仕人, 요리인, 이발사·미용사, 휴대품豫り係(보관)·안내계·下足番(신발지킴이) 이었습니다.²⁰⁰⁾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 실시되는 것이었지만 조선총독부는 “국민총력의 결집을 필요로 하는 때에 조선에서도 당연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총후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선전하였고, 16세에서 40세까지의 병역 연령의 남성을 일부 직업에 채용을 금지시키는 법률은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여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경이(輕易)한 직업은 남자의 취업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는 것으로 여자의 직업전선을 확대함과 동시에 남자 노무를 필수로 하는 중요산업부문의 강화를 꾀한다”라는 목적²⁰¹⁾이라며 조선에도 적용하였습니다.

법률 시행은 1943년 말이었지만, 아태전쟁 발발 이후 이러한 경향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가사사용인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 움직임 등을 추적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재조일본인 가정의 가사사용인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지. 더불어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 가사사용인의 추세와 관련하여 일제말 전시 총동원체제가 가사사용인 억제정책의 실효성과 영향,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199) 成田龍一, 「〔總說〕戦争とジェンダー」, 『近代日本の文化史 感情・記憶・戦争 1935-55年 2』(岩波書店, 2002). 11~12쪽.

200) 「厚生省告示 제556호」, 『(日本)官報』1943.9.23.

201) 朝鮮總督府 情報課, 「勤勞動員の新體制」, 『通報』149 (1943.10.15).